

# 第145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2月21日(火)

場 所 勞動委員會

### 議事日程

#### 1. 現況報告(계속)(質疑)

- 가. 勞動部
- 나.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 다. 韓國產業安全公團
- 라. 勤勞福祉公社
- 마. 韓國海外開發公社
- 바. 韓國勞動研究院

### 審査된案件

#### 1. 現況報告(계속)(質疑)

가. 勞動部	1面
나.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1面
다. 韓國產業安全公團	1面
라. 勤勞福祉公社	1面
마. 韓國海外開發公社	1面
바. 韓國勞動研究院	1面

(14時28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원이 되었으므로 第2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읍니다.

○立法調査官 柳盛薰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金令培 지금 報告받으신 請願은 國會의 調査團 派遣要請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것을 調査團을 구성해서 과건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小委에 넘겨가지고는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하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幹事會議에서 論議를 했읍니다.

그 결과 이 처리는 유보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報告받으신 請願處理는 유 보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 1. 現況報告(계속)(質疑)

- 가. 勞動部
- 나.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 다. 韓國產業安全公團
- 라. 勤勞福祉公社
- 마. 韓國海外開發公社
- 바. 韓國勞動研究院

(14時30分)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勞 動部 現況報告를 계속해서 上程하겠읍니다.

어제 1次會議에서 勞動부와 그 傘下機關의 現況報告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오늘과 내 일은 現況報告에 대한 質疑를 하겠읍니다.

質疑方法은 法上 質疑委員의 自由意思에 의해서 一括質疑나 또는 一問一答式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幹事會議에서 합의하기를 質 疑하시는 委員들의 質疑時間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平衡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 단 첫 質疑는 一括質疑하기로 하고 그 다

음에 答辯에 따라서 補充質疑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때 一問一答式으로 質疑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읍니다.

이 점을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유념하시고 各黨間에 합의된 事項인 까닭에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補充質疑 時 一問一答式으로 質疑하는 과정에서 質疑하는 委員外 他委員이 중간에 質疑를 하시는 것도 피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主質疑委員이 質疑하는 과정에서 他委員이 또 質疑를 한다고 하면 맥이 끊어지고 분위기가 산만하여지는 까닭에 어느 事案에 있어서 특이하게 質疑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사려가 될 때는 자기 質疑時間이 돌아왔을 때 그 事案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가겠는데 그동안 우리 勞動委員會의 정해진 慣例에 따라서 各政黨 順序別로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新民主共和黨 所屬委員부터 質疑가 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먼저 議事進行發言 주십시오.

○委員長 金令培 李相洙委員 發言하십시오.

○李相洙委員 우리 勞動委員會에 幹事制度가 있고 가능하면은 幹事制度를 통해서 合理的으로 勞動委員會의 運營을 해나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幹事會議에서 합의되었다는 事項인 質疑의 방법에 대한 결정은 勞動委員會 運營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幹事會議에 一括事項이 아니고 충분히 各黨의 勞動委員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幹事會議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 오늘 各黨의 勞動委員들이 만나서 그 합의를 존중해서 앞으로 勞動委員會 운영을 그렇게 할 것인가는 논의해 보기로 하고 오늘 勞動委員會 운영만큼은 과거의 관례대로 各委員의 自意에 맡겨서 質疑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本委員長이 이 문제를 거

론하는 벼두에 一括質疑를 하든 一問一答式으로 質疑를 하든 이것은 法에 의해서 質疑하시는 委員님의 자유에 속합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모든 集團이나 어떤 機關의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代表者끼리 합의가 된 사항은 지켜져가는 것이 이 社會의 동념이고 또 國會의 관례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합의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합의된 사항의 내용을 유념해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委員長으로서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各黨의 代表인신 幹事委員들께서 합의를 하셨으니 만큼 各黨의 幹事어른들은 所屬委員들에게 그러한 합의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정내용을 인식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新民主共和黨所屬 金炳龍委員 質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炳龍委員 金炳龍委員입니다.

우선 政府側에 몇 가지를 質疑하면서 一括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常委에서 調查團을 구성해서 現代重工業 現地인 蔚山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후에 勞動委員會 內務委員會 連席會議을 일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質疑應答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本委員이 現代重工業의 暴行事件은 중대하기 때문에 政府次元에서 收拾對策委員會를 구성해서 하루속히 그 事件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質疑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答辯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現代重工業 勞使紛糾 사태수 이원근 勞動組合 스스로 양쪽에 紛糾가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紙上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수습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어디까지 그 수습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더 나아가서 勞使間의 주장점을 어느 정도 접근하면서 앞으로 정상적인 勞組活動 또는 會社가 正常化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答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豊山金屬의 勞使紛糾은 해결책이 이렇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約 40餘名の 組合員을 해고시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政府로서 현재 어디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있고 또 수습 대안은 무엇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大宇精密 勞使紛糾도 오랜 시간을 끄는데 이 문제도 政府가 과연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종합해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三星重工業紛糾은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여기에는 현재 나와 勞使問題로 해가지고 勞總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組合員들의 일부가 軍에 입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紙上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勞動部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습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을 바랍니다.

그리고 신애전자 勞使紛糾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勞動組合幹部들은 拘束이 되었다가 나와서 다시 會社에 出勤을 하려고 하니까 안에서 막고 있다는 사실. 이와 같은 신애전자의 勞使紛糾에 대해서도 政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合理化 시켜주면서 勞使紛糾을 해결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釜山에 있는 港運勞動組合의 문제가 야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勞動部로서는 報告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勞動部로서 港運勞動組合이 과연 그러한 비리들이 있었는지 또 수습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수습을 할 것인지? 本委員이 알고 있기에는 勞動部에서 일단은 한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蔚山 勞動部傘下 事務所가 요 일 전에 방화를 당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써 勞動部 事務所가 방화를 당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勞動部長官은 상세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半月에 있는 再活院의 作業所에 있는 訓練員들이 1月16日부터 25日까지 作業을 거부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그 勤勞者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지? 또 해결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政府次元에서 勤勞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政府側에 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金東仁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仁委員 金東仁委員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實務局長께서 一問一答으로 答辯을 바랍니다.

최근 아파트團地 勞使紛糾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本委員으로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木洞아파트團地에 管理 및 警備員의 勞使紛糾은 勞動組合員들에 대한 勞動條件向上은 곧 住民의 負擔이 되므로 紛糾의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첫째 勞使當事者가 이 管理業體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住民이 勞使當事者가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擔當局長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입니다.

아파트團地管理의 형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用役會社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고 또 하나는 住民의 自治管理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木洞아파트는 住民의 직접 自治管理가 아니고 주식회사 신한영이라는 中間用役會社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勞使關係 當事者는 신한영과 勞動組合이 되겠습니다.

또 住民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住民代表로 구성된 理事會가 있고 그 理事會가 통제하는 管理事務所의 所長 이런 사람들이 使用者側 當事者가 되겠습니다.

○**金東仁委員** 그런데 문제는 本人이 알아본 결과 管理業體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管理業體의 의무가 그 아파트 관리에 坪當 30원 附加價值稅해서 33원에 한해서만 業體가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실지 내막에 있어서는 警備業務도 겸하게 되어있었는데 本人들이 아파트管理에 使用主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住民들이 여기에 따르는 勞使當事者가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 勞使紛糾가 생겼을 경우에... 만약 不當勞動行爲가 생겼을 때 住民들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勞動部가 規定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다음 제일 문제는 이 住民들이 지금 本人들 자체에서 경비를 하겠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자칫잘못하면 고용의 역작용이 생겨서 상당한 失業者가 생길 우려가 있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勞使當事者에 대한 問題를 勞動部가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알겠습니다.

○**金東仁委員** 그리고 다음 質問입니다.

서울地下鐵公社입니다.

이 地下鐵公社의 資金問題는 원칙은 地下鐵公社에서 勞使當事者間에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2月 勞動部가 一般職社員들의 陳情에 의하면 勞動部 東部事務所에서 資金을 技能職하고 같은 입장에서 공평을 기해서 해주라는 公文을 시달해놓고 하루만에 번복을 해가지고 다시 公文을 시달했다는 陳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概要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서울地下鐵公社는 技能職과 管理職이 함께 勞動組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勞動組合의 실제 執行權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技能職들입니다. 그러가지고 이 技能職 組合員들의 불만을 상당히 쌓여가지고 技能職의 資金을 一般職보다 3號俸씩 더 높이는 방향으로 團體協約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一般職에서 생각하기에는 技能職의 資金만 더 높고 號俸을 一般職은 그대로 있으니 상대적으로 資金이 격하되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하는 불만이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 地方事務所에 質疑를 했는데 勞動組合法에 보면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特定業體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이 한個의 團體協約을 받게 되면 나머지 과반수도 자동적으로 그 團體協約에 따라야 한다는 規定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가지고 勞動組合에서 3號俸씩 일률적으로 올리기로 團體協約을 했으니까 우리 事務職도 3號俸씩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質疑를 냈습니다. 저희 地方事務所에서 그것이 法律에 따른 質疑이기는 하지만 항용 있는 質疑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이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答辯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本部에서 다시 이 技能職側의 항의를 받아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때 하는 얘기지 당초에 資金策定에 있어서 一般職은 우대하고 技能職을 상대적으로 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團體協約을 체결했는데 그러한 경위는 무시하고 法에 있는 일반적 구속력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地方에서 잘못 해석 시달한 것을 정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金東仁委員** 이런 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알겠습니다.

○**金東仁委員** 다음 有料私設職業紹介所에 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有料職業紹介所에 있어서는 73年度 新規許可抑制措置로 인해서 지금 16年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時點에 상당히 許可業者들의 고령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有料職業紹介所를 경영을 하지 않고 대다수 70% 이상이 貸與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貸與中에서도 本人이 알고 있기로는 최고 億圓까지 貸與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勞動部에서는 이 問題를 每年 監査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答辯을 主務局長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勞動部職業安定局長 金濟憲** 職業安定局長입니다.

먼저 有料案内所에 대한 許可制度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有料職業案内所는 國公立 職業安定機關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서비스職種 등을 알선함으로써 國公立職業安定業務를 補充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紹介業務는 最初가 1968年度에 新規許可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내려 왔는데 勞動部에서 즉 許可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地域事情도 어둡고 하기 때문에 74年度에 各 市道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市道로 이양이 되어도 여러 가지의 弊害가 많습니니다.

그래서 新規許可를 79年度에 일단 중단했습니다.

新規許可를 중단하고 난 이후에 有料職業案内所를 둘러싼 여러 가지 不條理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未成年者의 人身賣買라든지 不法就業 斡旋 또한 無許可業者와 결탁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ILO권고를 보면 이런 폐해때문에 有料案内所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無料라든지 公共案内所를 확대하도록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新規許可凍結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방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許可權者의 고령화 자연감소 이후에 新規許可가 없기 때문에 79年度 許可中斷이후에 88년까지 우리 70個所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勞動部에서는 대처수단으로 無料案内所는 그 당시 중단할 79年 당시는 하나도 없었는데 77個所로 無料案内所를 늘렸습니다.

주로 無料案内所는 YWCA라든지 在鄉軍人會 經總등 이런 機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중단이후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그대로 許可를 안하고 계속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職業安定法改正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職業安定法이 改正이 되면 許可

要件을 강화하고 또 地域定數制 현재 보면 行政區域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事業體가 밀집된 데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地域定數制를 도입해가지고 有料紹介所를 신중히 再開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無料案内所라든지 또는 公共機關에 安定機關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東仁委員** 이러한 문제는 勞動部가 앞으로 신경을 써서 不條理를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演藝人海外送出業務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 演藝人海外送出業務가 개시된지 아마 9個月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까지 送出業務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勞動部職業安定局長 金濟憲** 현재에는 그것이 84年 중단이후에 昨年 2월에 再開申請을 받아서 5월에 再開許可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거의 非理 不條理 國威損傷 등을 그런 制度的인 장치를 가해가지고 그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現地 協議體라든지 國內協議體를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兩 協議體에서 지금 여러 가지 業所別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求人 要請중에 있고 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곧 아마 처음 시작이 再開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金東仁委員** 그런데 許可以後 9個月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업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勞動部職業安定局長 金濟憲**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절차중에 있는데 아마 이 달이나 내달초쯤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金東仁委員**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本人이 안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文化交流등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脫線의인 人身賣買와 또 利權介人 등의 상당한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本人이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상당히 質問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個的으로 局長한테 書面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命培 다음은 李海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瓚委員 앞의 두분 委員께서는 一括質問形式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事案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實務局長께서 答辯하실 것은 答辯해 주시고 政策的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長官께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事案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一問一答式으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나간 것부터 확인할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昨年 國政監査 무렵해서 大企業 特別監督을 勞動部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處理結果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때 現代建設 現代重工業 大宇自動車 서울地下鐵公社 여기 내군데를 하셨지요? 處理結果가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主務局長께서 答辯을 해주십시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勤勞基準局長 金基德입니다.

李海瓚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4個所를 해서 10月7日 일단 是正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당시 總 金額으로 보면 4個業所 합해서 約 40億6,200萬이고 그 외에 産業安全保健分野가 約 36件이 있습니다마는 會社別로 그 동안에 서울地下鐵公社와 現代重工業의 경우는 金品 未支給分을 全額 支給을 했고 그 외에 産業安全保健分野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시정이 되었고 지금 한 두 件이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에 勞使紛糾때문에 아직도 분을 못 열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 시정이 안된 것이 한 두 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現代建設과 大宇自動車の 경우는 3次에 걸쳐서 저희들이 是正促求를 했습니다마는 완전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金曜日 그 사람들

로부터 최종보고를 받아본 결과 大宇自動車 경우는 저희들이 是正指示한 그 상태로는 이행이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그 시정에 버금가는 그 이상 가는 여러 가지 手當制를 신설함으로써 勞使間에 완전히 合意가 되어서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勞使兩側으로부터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現代建設의 경우는 저희들이 是正指示한 21億원입니다마는 현재 23億원을 金融機關에 일단 예치를 하고 3月分 賃金支給時에 지급을 하겠다고 나머지 자체 확정분이라고 84年分과 85年分 2年分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곧 확정을 해서 전부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지요.

現代建設 23億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언제 어디에 예치를 했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그 金融機關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언제 예치했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지난 金曜日로 기억합니다.

○李海瓚委員 예치가 확실합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예치한 確認寫本을 받았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이것을 예치한 것은 勞組에서 勤勞者들이 受領을 거부해서 예치한 것인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즉 저희들이... 中央投資金融株式會社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아니 왜 예치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그 예치는 그 동안에 보고받기는 저희들이 是正指示한 21億과 84年 85年分을 합해서 대충 60億 정도로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勞動組合側에서는 저희들이 是正指示한 그 이외에 다른 金品도 받을 것이 있다 이래 가지고 勞組에서 제시한 것이 230億원이라고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約 3個月이상을 勞使間에 서로 協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것과 전부 통털어서 조치를 하느냐 아니면 勞動部에서 지시한 것만 하느냐 등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協議를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결렬이 되어서 현재 23億을 일단 예치를 하고 다음 달 貨金支給時에 지금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읍니다.

○李海瓊委員 그러면 84年度 85年度分 확정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그것은 그 사람이 約 7,000名 내지 8,000名이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시간은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86年分 확정하는 그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일단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그것은 언제까지 하겠읍니까?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그것은 4月末까지 정도는 확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海瓊委員 4月末까지요? 그러면 局長께서는 4月末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여기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그것은 제가 약속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보고를 접수를 했고 반약에 그때까지도 또 안 된다면 계속 추구를 하겠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읍니다마는 사실은 司法處理를 하면 간단한데 저희들은 勞動者들의 權利救濟를 원상회복을 해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연기를 해주면서 지금까지 왔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勤勞者들이 저희들이 시정한 金品金額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李海瓊委員 그것을 언제까지쯤 하실 수 있습니까?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저희들은 계속 1個月單位로 그동안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李海瓊委員 그러니까 勞動委員會를 몇달 해보니까 약속하고 그 다음에는 오리무중이 되고 함용자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勞動委員會에서 質疑應答이라든가 이런 것이 實效性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속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약속이 별 實效性이 없다는 것을

제가 6個月을 하고 나서 느낀 경험입니다.

그래서 작아도 좋고 커도 좋고 여하튼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매듭을 저 나가기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23億이면 23億 또 얼마면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金額에 대해서는 勞組하고 異見이 있는 것은 둘 사이에 또 다름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勞動部에서 확정된 것 만큼은 會社가 이행을 반드시 지키도록 行政監督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것도 지금 6個月이 지나도록 本人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이제 엇그제 예치한 정도인데 84·85는 착수했읍니까? 자체에서...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이것을 언제까지 매듭지으실 수 있습니까?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지금 일단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빨리 하루속히 전부...

○李海瓊委員 하루속히 이렇게는 앞으로는 그런 말에는 안 넘어갑니다.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會社쪽에서는 4月末까지로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李海瓊委員 勞動部の 약속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會社側의 약속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그런데 是正命命이라는 것이 일종의 行政勸告인데 여기에 만약에 불응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은 法에 따라서 司法措置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좀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海瓊委員 이런 경우는 司法措置하면 拘束이지요?

勸勞基準法適用基準에 보면 拘束에 해당됩니다.

지난번 監査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拘束基準에 貨金滯拂 3個月分以上 貨金이 滯拂이 되거나 1回以上 滯拂期間이 30日 이상 1年 이내 5回 이상 滯拂하는 등 常習滯拂로 인하여 集團勞使紛糾을 야기한 경우 拘束이라고 勞動部の 勸勞監督官職務規程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國政監査 때도 現代建設社長이 나오셨을 적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렇게 하십시오. 워낙하면 이것이 會社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勤勞者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勞動部는 당연히 기기에 대한 行政監督을 해야되는 것이니까 약속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局長님이 하시기 어려우면 長官께서 약속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現代建設 賃金未支給部分에 관해서 是正措置를 끝내겠는가를…

저는 앞으로는 적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좋고 확실히 하신 수 있는 날짜를 언명을 해주시면 그때까지 제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命培 이 문제는 政策的 중요한 事案이기 때문에 長官이 責任答辯하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여러 가지 사항은 勤勞基準局長께서 李海瓚委員 質疑에 答辯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根本的으로 勤勞者들이 金錢的으로 자기가 정당한 노력을 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勞動行政의 방향중의 기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李海瓚委員께서 質疑하신 문제에 대해서 지금 會社에서는 4月30日까지 더 시간을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4月30日까지는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勞使間에 액수의 차가 23億원은 86年度分으로서 종결 되었지만 85年度 84年度分이 60億에서 230億의 엄청난 액수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과정이 정말 어려우려나 생각이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이것은 勞動組合과의 직접관계가 아니고 實質的으로 勤勞基準法上 個人과 個人과의 去來에 대한 문제가 7,000名 정도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의 말미를 사실은 저희들이 여유를 주어서 4月30日로 會社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月30日까지 일단은 지불이 될 수 있도록 行政力을 저희들이 동원하겠읍니다마는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司法處理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4月30日까지 이행되도록 하시겠

다는 말씀이구요. 이행되지 않을 경우 司法處理하시겠다고 하셨는데 司法處理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은 勤勞基準法上 또 法대로 처리해야 되겠지요.

○李海瓚委員 拘束基準에 해당이 되지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은 한번 검토를 봐야 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產災等級判定을 할 수 있는 機關은 현재 어디입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그것은 현재 地方事務所別로 諮問委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治療機關에서 증상이 기재된 診斷書가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諮問委가 判定을 합니다.

○李海瓚委員 그럼 法律上으로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法律上으로는 지금 현재 障礙等級 判定을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됩니다.

(金命培委員長,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李海瓚委員 그러면 產災患者를 치료하는 病院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지금 현재 저희들은 主治醫가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障礙等級 14個 等級으로 나누어 있는 等級을 결정하지 말고 그 안에 121個 분류로 病狀이 나와 있습니다. 그 病狀만 기재해 오면 그 문제에 대한 諮問委가 判定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런데 지금 2月18日 朝鮮日報 新聞에 報道된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產災運轉士의 憤怒라는 記事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에서 調査를 해보셨읍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姜斤熙 18日이 土曜日이고 19日이 日曜日이라고 그래서 19日 日曜일에 저희들이 그 서류는 확인을 했습니다. 實質的으로 運轉士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運轉士가 만나주지를 않음 때문에 그 運轉士와 우리 職員間에 있었던 그 내용은 지금 監査官室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저도 이 資料를 오늘에서야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當事者의 呼訴文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내용에 관해서 제가 말을 안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해가 안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勞動廳의 職員이 產災級數를 책정하는 것을 가지고 級數를 높여 주겠다 9給짜리를 14級짜리로 높여 주겠다 9級일때보다 14級으로 높이면 約 600萬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모양인데 높여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저한테 온 呼訴文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두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勞動部 公務員의 큰 不正行爲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等級判定問題라든가 產災保險을 勞動部에서 관장하는 데에 따르는 行政公務員의 不正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저도 아직 사실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勞動部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를 우선 말씀을 해보십시오.

○勞動部 勞動保險局長 姜斤熙 李委員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 事件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永東 세브란스病院에서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가 補償金請求를 하면서 等級을 결정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等級決定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治療機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明洞에 있는 中大附屬病院 誠心病院 여기에 特診依頼를 해서 과연 永東세브란스病院에서 확정시킨 判定等級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조회를 했고 그 의뢰를 받은 誠心病院은 他 醫療機關에서 확정된 것을 可否에 대해서 所見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永東病院의 9等級14號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하는 도중에 지금 현재 病院에 入院하고 있는 者들에 대한 모든 補償金 算定基準이 平均賃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入院하고 있는 도중에 東洋高速의 賃金引上이 생겼기 때문에 平均賃金 改正事由가 다시 발생을 한 것입니다. 平均賃金改正이 정

당한 障礙等級은 실정이 낮다고 하더라도 算定基準이 되는 平均賃金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 바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職員과 被害者와의 사이에 等級이 올라갈 것 같고 補償金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많아진 差額에 관한 金品の 요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職員은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호소한 運轉士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監查官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金品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身分上 措置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저도 被害者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 볼 예정인데 이 處理結果를 언제까지 저한테 通報해 주실 수 있습니까?

○勞動部 勞動保險局長 姜斤熙 이것은 서회들이 運轉士를 만나서 확인만 되면 즉각 措置를 하겠습니다.

運轉士가 記者에게 이런 것을 呼訴를 한 뒤에는 전혀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職員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李海瓊委員 그러니까 이 患者의 居住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技士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야 양쪽의 의견을 다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실에 대한 有無를 나름대로 판단하실텐데 그래서 勞動部의 措置結果를 언제까지 이 事案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실수 있는가 약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勞動部 勞動保險局長 姜斤熙 일단 그 運轉士를 만나는 날짜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만났다고 그러면 公務員에 대한 身分上 措置는 懲戒回附가 되어야 되는데 懲戒에 回附되는 期間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李海瓊委員 아무리 길어도 좋습니다. 날짜 약속만 받아놓으면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날짜를 안잡아 놓고 불분명하게 해놓으니까 만사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도 안됩니다.

○勞動部 勞動保險局長 姜斤熙 날짜를 정한다

기 보다는 꼭 措置를 합니다.

○李海瓊委員 그러니까 이런 事案에 대해서는 勞動部로서 언제까지 처리해야 할 기본적인 實行이 있을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두가지 측면에서 李海瓊委員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公務員의 不正行爲에 대한 資質問題와 等級判定에 대한 制度的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의 公務員에 대한 措置에 대한 낱씨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런 新聞을 보고 대단히 놀랐고 또 여기 勞動委員會 委員님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新聞에 나고난 뒤에 바로 本部 監查官室에서 가서 그 職員에 대해서는 陳述調書를 받았고 技士에 대해서는 방금 局長이 報告 드린대로 못받고 있는데 일단 짐으로 가서라도 陳述調書를 받아가지고 낱씨에 대한 명확한 것은 이번 會期內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海瓊委員 이번 會期內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事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豊山金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豊山金屬에 관해서 지난번 內務勞動連席會議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그랬는데 현재 豊山金屬이 操業이 再開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점점 惡性으로 가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또 豊山金屬 勞動者로부터 저한테 呼訴도 해오고 그랬는데 操業再開가 지금 전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勞組側이 제시하는 要求條件을 제가 들어보니까 대단히 勞組로서는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勞組에서 요구하는 條件은 우선 건전한 組合活動을 보장해달라.

두번째는 閉鎖期間동안의 賃金을 줄 수가 없으면은 生活補助金 형태로라도 60%라도 달라.

세번째으로는 拘束者와 解雇者를 위해서 善處해달라 꼭 復職시켜달라 꼭 꺼내달라 이런것도 아닙니다. 표현이 善處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要求條件에도 불구하고 會社에서는 아무런 약속이 없이 團體交渉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나기는 만나다마

는 성의있는 交渉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勞動內務連席會議에서 두 長官께서는 舊正前에 操業이 再開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舊正 지난지가 벌써 한참 되었고 3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두달 가까이 操業再開가 되지 않고 있는 가장 根本的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張永喆 李委員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金炳龍委員께서 質疑하신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綜合的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李海瓊委員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저는 하나하나를 짚어나가면서 質問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操業再開가 안되는 根本的인 원인중에 중요한 것들을 勞動部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答辯準備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海瓊委員 이 부분에 관해서 主務局長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主務局長이 答辯하세요.

○李海瓊委員 제가 蛇足처럼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連席會議에서 勞動部는 산통이나 깨고 機密이나 누설하는 그런 部署라는 굴욕적인 표현을 일개 治安本部長으로부터 主務部署의 長官이 바로 앞에 앉아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豊山問題에 대해서 勞動部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根本的인 이유는 勞使間에 對話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李海瓊委員 勞使間에 對話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勤勞者들의 要求條件이 그것하고 다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사실은 現代와 豊山金屬問題 때문에 1月23日 內務·勞動連席會議를 한 줄알고 있습니다. 實質的으로 그때 企業도 건전하게 運營이 되어야 되고 또 勤勞者들도 참 자기 勞動現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고 또 바람직한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本部局長을 여

이번 파견을 해가지고 實質的으로 勞使間에 對話調停을 하려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企業體와 勤勞者間에 信賴性問題등 여러 가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빠른 시일내에 政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正常操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런 答辯은 지난번 連席會議에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25名의 勤勞者가 또다시 解雇되었읍니다. 그리고 그중에 9名의 兵役特例者는 徵集令狀까지 發付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解雇者중에는 거의 全員이 勞組의 常任執行委員들입니다.

그날 連席會議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豊山金屬의 폭발의 위험성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명분이고 내용상의 實質的인 목적은 勞組를 와해 내지는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하다라는 것이 勞動委員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連席會議가 있는 후에 大學解雇를 하고 軍隊로 徵集을 하고 이런 事態까지 발전하고 있고 또 勤勞者들의 요구하는 條件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團體交涉이 성실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長官께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操業再開 전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操業再開 전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勞組側이 요구하는 60%의 生計補助金 이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事件이 발생한지가 얼마가 되었는데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까?

왜 판단을 안하셨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지금 委員님 말씀대로 勞使間의 爭點중에 그 문제가 爭點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현재 勞使間에 그 문제를 가지고 意見調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 관찰해서 雙方間에 협의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지금 勞動部에서는 無勞動無賃金이 基本的으로 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번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어느나라에서나 一般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第三者 介入禁止도 全世界的으로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원칙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特秀的인 與件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럼 無勞動 無賃金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 그리고 그것이 社會的인 문제까지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罷業基金問題라든가 다른 產別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이것이 實效性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또 하나 無勞動 無賃金의 원칙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歸責事由에 대한 判定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이 경우는 歸責事由가 어디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을 저희들이 檢討해 보겠읍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지고 勞使間에 對話가 된 것이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歸責事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경위를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보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사건이 발생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 직장폐쇄된지 50日 지났지 않습니까? 50日 동안 직장폐쇄의 사유를 아직도 勞動部가 판단을 안하고 계시다는 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勞使間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月3日까지 休業했다가 그다음 바로 操業中斷에 들어갔는데 이 뒤에 물론 勤勞者들이 拘束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勞使間 대화의 창구가 열리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그외에 노傭 노페이의 문제와 生活補助金으로서의 문제 이것은 대화의 기간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歸責事由가 勤勞者에 있는지 會社에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읍니다.

○李海瓚委員 거기가 浦項事務所 관할인데

저기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勞使紛糾가 일어난데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없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이 浦項 勞動事務所 관할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勞使紛糾가 일어났고 50日째 직장폐쇄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公權力을 투입한 가장 큰 명분중의 하나가 탄약의 정상적인 생산을 國防部가 勞動部와 內務部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달동안 탄약이 생산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側에서 보면 그것은 엄청난 國防力의 약화와 國家安保論理에 커다란 파탄을 가져오는 결과를 빚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勞動部에서 國家安保의 입장에서 또 勞動者들의 生存權의 입장에서 또 한 기업의 正常操業을 위한 입장에서 이 操業再開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는 無勞動 無賃金에 입각한 生計補助金 지급에 관련한 勞動部 자체판단을 아직도 유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勞動部가 뭐하러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그런 뜻이 아니고 勞使間에 團體交涉이 진행되지 얼마 안되어서 勞使間에 서로 協議體가 구성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조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李委員께서 60%에 대한 것은 「노워 노페이」의 문제가 아니고 生活補助金으로라도 이 정도는 지불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노워 노페이」를 주장하면서도 勤勞者들이 그동안 일을 못하고 生計가 어려워니까 生計費 補助를 준 경우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歸責事由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기 전에 勞使間에 협의가 되면 그 이상 좋은 방향이 없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李海瓚委員** 이 歸責事由는 20餘名이 마지막까지 농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公權力이 들어갔고 그전에 勞組가 不法籠城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폐쇄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성을 주동하던 사람을 해고시키고 징역보내고 군대 끌어가고 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犯法事實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操業을 중단시켜서 그사람들 生存權까지 어렵게 만드는데 勞動部가 수수방관하고 계셔도 됩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그것은 李委員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말로써 操業하자 하는 것하고 쌍방간에 신뢰성 있는 것하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勞動部에서는 빨리 操業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지금 1月 2月 평온한 시절에 操業이 안되었는데 3月이 되면 賃金引上問題가 재개될 것이고 다른 事業場의 勞使紛糾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操業이 가능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勤勞者들도 일하는 장소에 가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자기들로서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操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요 며칠전 거기 다녀온 局長으로부터 그런 분위기를 報告받았고 둘째 生活補助金에 대한 것은 하루이틀 밖에 안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간에 勞使間에 合意가 될 수 있도록 勞動部에서 조정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제가 왜 豊山金屬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느냐 하면 豊山金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長官께서 취임하신지 2個月 되었는데 그동안 勤勞者가 몇名 拘束되었습니까? 무려 60名이 拘束되었습니다.

그것도 勤勞者들이 不法 無法 테러를 하고 있는 양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어디 勤勞者들이 不法의인 테러를 심하게 자행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추세로 拘束이 되면 今年에는 勤勞者들로 감옥이 꽉 찰 판입니다.

어제 汝矣島에서 1,500餘名の 勤勞者가 연행되었습니다. 建國大學校에서의 사태때보다도 훨씬 많은 數字가 연행되었을 것입니다. 建國이래 제일 많은 勤勞者가 한꺼번에 연행됐을 것입니다.

물론 勞動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張長官  
께서 취임하신 이래 이렇게 많은 拘束者들  
이 생겨나고 있고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꼭  
그렇게 拘束까지 해야만 하느냐 심지어 大  
邱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그 質問으로  
넘어 가지요. 公權力이 과다하게 다시 투  
입되고 있습니다.

學生들은 정역 살으면 나와서 취직하거나  
될 할 수 있지만 勞動者들은 정역살고 나  
오면 또 勞動者입니다. 어디를 갑니까? 前  
科者 만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  
니까? 한달에 30名이면 1년에 몇百名이고  
그것이 몇年 누적되면... 勞動者들은 拘束되  
었다가 나오면 拘束勞動者가 되어서 사회속  
에서 勞動運動家로 성장하고 현장에서 紛糾  
가 일어나면 또 잡아넣고 하면 그것이 勞  
動部行政의 전부입니까?

그런데 事業主는 그동안 몇명이 拘束되었  
습니까? 한名도 拘束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勞動部에서 지시한 賃金  
支拂같은 것도 안하고 있어도 事業主에 대  
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勞動部가 勤勞者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엄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하통상 조사차 大邱에  
갔었습니다. 어제 業務報告하시면서 報告하는  
내용이 너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대하통상같은 경우는 어린 女性 勤勞者들  
이 기숙사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  
셨는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事業場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事業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勞動部의 기본정책이 어떡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대하통상에 대해서 報  
告드리겠습니다.

이 事業體는 大邱에 있고 대표자는 재병  
하 종업원은 364名이고 제품은 섬유제품입니  
다. 조합장은 윤인석씨이고 조합원은 100名이  
고 89年1月27日 설립되었고 주생점은 어용노  
조퇴직과 상여금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규배경은 89年1月27日 박동일이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상급단체 인준  
증이 없어 접수치 못하고 同日 윤인석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대구 북구청에 접수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줄 알고 있습니  
다.

박동일등 100餘名은 기 설립된 노동조합은  
사용주 사주에 의한 어용노조이므로 퇴진요  
구 설날 상여금 150% 지급 년월차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분규경위를 말씀드리면 89年1月28日 전국섬  
유노련 주선으로 조직분규 수습안에 당사자간  
합의해서 89年2月1日 조합원 선거에 의하여  
집행부 구성되어 89年1月29日 14時 정상근무  
했습니다. 89年1月29日 박동일측에서 합의사항  
파괴 불이익주장 89年1月31日 해고자 이병수  
삼공전자 근로자 30餘名이 농성근로자 80餘  
名과 합세 농성했고 89年2月1日 계열회사인  
대하염공 근로자 150餘名이 회사정문에 와서  
동조 농성을 하며 사장 면담을 요구하였습  
니다.

○李海瓊委員 되었습니다. 쟁점이 된 것을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勞組設立申告를 하는데 勞使紛糾의  
쟁점이 야기되는 근본원인은 勞組設立을 申  
告하는데 大邱 北區廳에 設立申告 별적에  
聯盟의 인준증이 없어서 이것을 안받아 주  
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北區廳으로부터 質疑  
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局長 말씀하십시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입니다. 答  
辯드리겠습니다.

本部에서는 그런 質疑를 받은 사실이 없  
습니다.

○李海瓊委員 그러면 大邱 勞動廳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확인 못했습니다.

○李海瓊委員 그러면 勞動部의 기본입장을  
제가 확인하지요.

勞組設立申告를 했는데 聯盟의 인준증이  
없어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時間後  
에 인준증이 있는 勞組를 설립해서 가져왔  
습니다. 앞에 申告하러 온 사람은 150名의  
勞組員이 있었고 뒤에 있는 사람은 30名의  
勞組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하통상의 경우는 다른 직종은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섬유뿐입니다.  
그것도 300餘名이 방직을 해서 輸出하는 회  
사이기 때문에 다른 勞聯에는 가입할 수

있고 纖維勞聯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인준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입할 產別勞聯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대하동상의 경우는 다른 勞聯에는 가입할 수 없지요? 난일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니까...

그런 경우 인준증이 있으나 없으나 纖維勞聯에 가입한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纖維勞聯쪽에서는 인준증을 잘 안내주려고 하고 北區廳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勞組設立申告書接受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접수하고서 보완조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組設立할 때 上級團體 인준증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法에도 되어 있습니다. 慣例의으로도 그렇고...

○**李海瓚委員** 늘어갈 勞聯이 纖維勞聯밖에 없으니까 일단 접수하고 그것은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케이스의 거꾸로 된 사례가 신한견직에서 있었습니다. 인준증이 없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접수시켜 놓고 보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인준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이미 접수된 것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해서 반려당한 사례가 大邱 北區廳傘下에 있었습니다.

民主的인 勞組기 서러고 하면 그렇게 막고 소수의 유명 勞組가 서러고 하면 허용해주고 이러는 것이 北區廳의 한 例로서 지금 대하동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가지고 紛糾가 생겼는데 勞組間에 紛糾가 생기고 御用勞組問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勞組는 사무실이 없어서 勞組員들이 밖에 나가서 組合活動을 하려고 하니까 勤勞者들을 못나가게 기숙사에 감금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는 勞動部의 문제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大邱勞動廳의 報告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 勞動部에서 이번 사건 이후에 현재 정밀 監督을 그 회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언제부터 실시하셨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지난 2月20日 大邱

地方廳에 勞動女性 相談員을 우선 파견해서 그 회사에서 勤勞者들을 기숙사에 감금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 勤勞者들을 여러 사람 집견해서 알아 봤는데 爭議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기숙사에 감금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爭議 발생이후 외출 통제 등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勞動廳에서 현재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報告가 있었읍니다.

○**李海瓚委員** 실시하고 있습니까?

외부통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금입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紛糾가 나서 勞·勞紛糾가 되고 있으니까 회사측에서 외출통제 등의 조금 불합리한 수단을 쓴 것 같습니다.

○**李海瓚委員** 그것이 조금 불합리합니까?

그 공장은 3교대합니다. 하루 8시간씩... 그러면 나머지 16시간을 임의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勤勞監督結果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現地에서 答辯을 해서 제가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왕에 精密監督을 하신다니까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大邱勞動廳에 가서 다른 會社하고 연대해서 점거농성도 하고 그랬는데 농성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잘못된 일도 있을 것이고 業務妨害를 부분적으로 받은 사실도 있겠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大邱勞動廳에서 公權力을 요청해서 이 근로자들을 連行해 갔읍니다. 警察署로 連行을 해가니까 근로자들이 陳述을 거부했습니다. 勤勞監督官들이 參考人으로서 나가서 參考人陳述을 다해 가지고 拘束令狀을 신청해서 전격적으로 다 拘束이 되었습니다.

長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大邱勞動廳에서 이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 勞組를 못만들게 방해를 하고 또 會社內에서 管理職들이 女性勤勞者에 대한 구타가 심하고 그래서 勞動廳에 와서 여러가지로 농성을 했는데 그것을 告發措置를 해서 다

섯名인가 여섯名인가 拘束을 시켰는데 勞動廳에서 이렇게 시킬적에는 충분히 拘束事由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어떤 심이 그렇게 拘束事由에 해당되니까? 이제 勞動部業務報告에 보면 勞動部職員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폭행을 당했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사실은 廳舍占據籠城이 6日間이나 걸려서 民願處理도 불가능하고 농성과정에서 廳舍器物을 파괴했고 농성근로자를 실득하는 勤勞監督官 1名에게 농성자가 폭행을 했고 廳長 실득은 거부를 하고 地域 警察署長의 書面勸告등을 무시하고 해서 순수한 勞動運動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왜냐 하면 第3着가 거기에 직접 관련 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성을 하다가 합의가 되어서 구정때 歸鄉했는데 歸鄉을 안한 몇 사람이 8日까지 농성을 했어요. 그런데 6日까지는 業務妨害를 별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 大邱勞動廳長의 말입니다. 그리고 7·8日 이틀정도는 業務妨害가 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캐시밀리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器物이 얼마나 파손되었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한 600餘萬원 되는 것 같습니다.

○**李海瓚委員** 그 다음이 勤勞監督官이 얼마나 다쳤습니까? 勤勞監督官은 擦過傷을 조금 입었습니다. 1週정도... 그러면 그것이 勞動部가 노동자들을 警察에 告發措置해서 警察에까지 勤勞監督官이 가서 參考人陳述까지 해서 拘束稟申을 내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사실은 6日동안 占據되어 있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勤勞監督官과 우리 勞動廳에 있는 幹部職員들이 會社와 절충을 하고 중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거기에 대해 순응을 않고 계속 廳長室을 占據하고 그래서 本部에서 궁금해서 廳長室에 전화하니까 내가 廳長이오 할 정도로 國家

機關이 公信力이 없고 또 해산될 기미는 안보이고 아무리 중용해도 안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중에서 拘束이 되었는데 拘束事由가 무엇입니까? 大邱檢察廳의 送致書類에 보면 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違反하고 業務妨害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엄청나게 심한 救社隊 폭력이 그 동안에 있었는데 그런 경우 事業主는 하나도 拘束을 안했는지요?

그 다음에 業務妨害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勞動廳의 입장에서 7·8日 이틀인데 그것을 인내를 못하고 告發措置해서 조그마한 사무실에 최루탄을 여러발을 까뜨려 가지고 질식시켜 가지고 끌어다가 警察에서 拘束을 시키는데 參考人으로 勤勞監督官이 나가서 陳述을 하면 그 勞動廳이 노동자들로부터 窓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勞動廳 서터 내려놓고 業務보고 있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拘束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 농성을 안하는데 業務를 제대로 못보고 있어요. 民願業務 보러오면 누구냐고 서터 이만큼 내리고서 서류집수받고 서터 다시 내리고 그리고 서류 꾸며가지고 와서 서터 올리고 내주고 그게 公共機關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런데 李海瓚委員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政府의 公共機關이 건전한 勞動運動으로 해가지고 勞使間에 協議를 보든 또 政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6日間 占據하고 그 과정에 會社社長이 面談을 하자고 그랬더니 勞動廳 못만겠다 물론 行政에 대한 不信問題도 있겠지만 그러한 勞使間의 문제가 또 公共機關을 占據하고 이러한 풍조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李海瓚委員** 대하동상에서 勞使爭議가 일어났을 적에 20餘名이 4週 3週 8週 이렇게 救社隊 管理職員에 의해 다쳤는데 한 사람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勤勞監督官이 1週정도의 擦過傷을 입었는데 그게 暴力行爲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농

성을 하고 있는데 安企部하고 保安司하고 여기서 공동으로 作戰을 했습니다.

本部에서 전화하니깐 내가 勞動廳長이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전화만은 사람들이 바로 安企部 保安司에서 걸려온 전화를 여러 통화를 받았읍니다. 80 1118 인가 하는 作戰을 지금 실시할 것이냐 30分 연기할 것이냐 빨리 通報해달라 이런 전화가 수없이 걸려 왔읍니다. 그 동안에 關係機關對策會議를 통해서 勞動問題를 治安次元에서 보지 못하도록 지난 國政監査에서 가장 力點을 두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깐 이제는 전화도 이렇게 協調體制로 해가면서 公權力을 投入하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今時初聞입니다.

○**李海瓊委員** 現地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今時初聞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읍니다.

이런 것처럼 昨年年末부터 꼭 한번 보십시오. 就任하신 이래 紛糾가 타결되어 가고 있던 豐山金屬은 저렇게 악화시켜서 操業의 전망이 없고 大宇精密의 경우 지금 100日째 가 가도 전혀 전망이 없고 公權力을 투입해가지고 60名 가까운 拘束者들이 다 釋放되고 있습니다. 政治犯이라고 해가지고 다 釋放을 시켜놓고 있는 판에 노동자들만 이렇게 구속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신뢰를 가지고 두달을 지켜 보았읍니다마는 최종적인 저의 結論은 이렇습니다.

정말 治安本部2次長인가 하는 사람의 말대로 勞動部는 산통이나 깨고 기밀이나 누설하는 별 의미없는 部署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勤勞監督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랬읍니다. 勤勞監督官들이 어려워서 活動費를 지난번에 100%를 引上시켜서 勤勞意慾을 고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朝鮮日報 오늘 新聞報道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不正을 하지 않나 아니면 大邱勞動廳에서 제가 만난 勤勞監督官은 대하통상내에 전혀 그런 행위가 없다고 저한테 抗辯을 했습니다. 지금 勞政局長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통을 깨거나 빨아도 걸레라고 하는 그런 악명을 떨칠 수가 없는

지경으로 勞動部가 더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결과가 우리 社會에 도움이 된다면 백번이라도 찬성하겠으나 이렇게 行政的으로 처리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누적이 되어서 많은 拘束勞動者들이 생겨나고 強制徵集을 당하고 또 除隊하고 그렇게 해서 그 노동자들이 밖에 나와서 社會運動團體로서의 세력을 형성하고 한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盧武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一括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먼저 勞動部의 報告資料의 不實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부 釜山港運勞組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제 釜山港運勞組에 관해서 약간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내용은 84年 釜山港運勞組에 관한 特別監査의 結果報告書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88年10月 港運勞組所屬 노동자들이 勞動部에서 特別監督要請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한 處理結果를 報告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세번째로 港運勞組非理에 관해서 勞動部가 과거에 지득한 자료 또는 公務員이 지득하고 있는 非理資料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韓光玉幹事, 盧仁煥幹事와 司會交代)

그런데 첫번째 84年 特別監査結果報告資料는 지금 勞動部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깐 관련 文書가 확인되는 대로 제출예정이라고 했는데 公文書가 규정에 의해서 廢棄되었으면 廢棄되었고 아니면 保存하고 있어야지 관련 文書 확인되는 대로 제출예정이라는 이러한 答辯은 무성의한 것이거나 또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88年10月 勞動部長官에게 한 特別監査要請에 대해서는 11月 釜山港運勞組로부터 호소문이 無記名으로 제출된바 民願事務處理規程 第2條에 의거 業務에 참고토록 管轄行政官廳인 釜山直轄市에 11月23日에 移送措置하였음 되어 있는데 이 호소문이 따로 11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되 10월에 접수되어서 釜山市로 移管된 特別監査要請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관한 것을 물었는데 왜 엉뚱한 答辯을 하고 계신지요?

다시 이어서 質問하겠습니다.

釜山市에서 勞動部로 移管받은 소위 特別業務監査要請에 대한 回信을 보신 10月25日 勞動部에 접수된 것이 10月27일에 釜山市로 넘어갔다고 陳情人에게 通報해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釜山市에서 陳情人에게 通報했습니다. 記名입니다. 釜山 東萊區 蓮山洞 이영수와 蓮山洞 최봉홍 두사람의 記名 監査要請인데 여기에 대해서 11월에 호소문같은 아무 法律的 의미도 없는 그것을 들고 나와서 答辯에 같음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 인지를 이게 國會입니까 라는 質問에 대해서도 분명한 答辯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港運勞組非理에 關係해서 과거 勞動部가 지득한 자료 또는 公務員이 지득한 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勞動部에 가서 書類綴을 다 뒤져보기 전에 알수 없으되 심의있게 해주셔야지요. 84년에 特別監査를 했던 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개 개인 또는 勞組事務所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勞動部는 왜 가지고 있지도 않은지? 그에 關係한 자료가 있는데 84년 당시에 特別監査를 했는데 이 監査에 關係했던 公務員이 지금 勞動部에서는 退職하였는지 關係했던 公務員 全員の 이름을 밝히고 각기 現職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만일 그 公務員들이 있다면 모른다는 答辯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88年10월에 노동자들이 낸 特別監査要請書에 附된 監査要請의 내용이 84年 勞動部の 釜山港運勞組의 特別監査結果報告書 內容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勞動部에서 지적했던 모든 내용이 지금 그대로 다시 陳情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사건을 놓고 왜 釜山市도 그렇게 가볍게 이첩해 버렸는지, 그 法律的 근거는 勞動組合法이 改正되었기 때문에 特別監査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職業安定法 關係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法律的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答辯해 주시기 바

랍니다.

特別業務監査結果報告에 關係서는 몇가지만 발췌해서 지적만 하고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밝히겠습니다.

釜山港運勞組 特別業務監査結果報告 84年3月... 밑에 무슨 部라는 이름은 없는데 이것 勞動部에서 한 것 맞지요?

釜山市에서 한 것입니까 勞動部에서 한 것입니까? 84년에 勞動部에서 하셨지요? 企劃室長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勞動部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勞動部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 안 그러면 읽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런 것 같습니다만...

○盧武鉉委員 勞動部에 적어도 이와 같은 書類가 비치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勞動部도 함께 參與했던 것이니까요.

勞務供給權 行使에 따른 問題點으로 지적해 놓은 것이 勞務供給權 行使에 따른 不條理 組會員 新規加入時 多額의 金品授受가 慣例化되어 있고 T.O.C.制度施行에 따른 大幅減員이 豫想됨에도 83年4月以後 1,259名이 新規加入했다. 그런데 꼭 같은 事態가 88년에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約 1,000名中에 700名정도가 순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新規加入은 사실상 就業中에 있는 臨時組會員을 優先하여야 하나 소위 아이방이라는 것 말이죠. 아직도 臨時組會員이 多數 존재하고 있는 반면 外部人이 加入한 事例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88年度에는 外部人이 加入한 事例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約 700餘名이 外部人士고 約 1,000餘名이 소위 아이방이라는 臨時組會員이 組合費만 내고 아무런 權利行使도 못 하는 臨時組會員이 여기 있다. 增員에 따른 賃金所得減少 組會員 不滿招來 이것이 88년에 다시 再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둘째 組會員 轉配, 補職에 따른 不條理, 作業種類別로 賃金隔差가 커서 轉配가 利權化하고 있다. 1부두에서 2부두로 가느냐 2부두에서 3부두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돈장사 한다는 것입니다. 連絡員 連絡所長補職에 따른 不條理素地 이런 것이 있죠.

이 문제는 가장 不滿이 없는 곳이 仁川 港運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몇페이지씩 있습니다.

그다음 各種 權限이 集中되어 組合員의 新規加入 轉配 補職등 人事權이 委員長에 集中되어 있고 執行部の 獨善과 橫暴사태가 발생합니다.

다섯째 그래서 막강한 執行部の 장악을 위한 紛糾가 深化되고 뿌리깊은 固定系譜가 존재해서 組職紛糾가 약순환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88年の 事態와 똑같습니다.

이 監査結果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合理的인 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큰 것만 말하면 人力管理의 共營制採擇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釜山市에서 規約을 改正하도록 권유해서 規約改正이 되었습니다. 人事權을 조금 分散하는 공정한게 할 수 있게 했는데 그이후 87년에 와서 이 規約이 다시 이 監査 이전으로 復歸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첫번째 質問은 어떻게 報告가 不實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報告해도 靚참을지 長官께서 명백하게 答辯을 해주시고 本委員이 금방 84年 監査結果報告에 따른 내용의 지적한 부분이 지금은 다 剔決되고 是正되었는지 아니면 그당시 일부 是正된 것이 다시 原狀으로 復歸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88年の 엄청난 新規加入은 소위 臨時組合員에 대한 기회의 박탈이 아닌지 박탈로써 불공정한 것은 아닌지 또는 荷役作業 機械化에 따른 人員減少의 추세에 逆行하는 것은 아닌지 이 문제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솔직하게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있는가 勞動部에서 이대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얘기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이 質問에 무게를 더 실기 위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檢察은 88年4月1일부터 이 勞組執行部の

非理 위에서 자적하는 몇가지 人事및 金品授受에 관해서 調査를 했습니다. 해서 8個月 동안 檢事가 세번이나 바뀌어가면서 調査를 한 결과 내놓은 것이 10月27日에 組合委員長과 또 한사람의 幹部를 不拘束起訴 했는데 組合委員長에게는 恐喝 背任등이 約 5회에 걸쳐서 1,100萬원 정도의 金品을 授受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이 지금 정확한 金額을 本委員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勞組의 人事供給權을 둘러싼 非理입니다.

그런데 公訴狀記載犯罪事實을 읽어보면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 바라보면 이것은 日常的으로 반복되는 組織的 類型的 犯罪라는 것이 公訴事實 그 자체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유사한 前科事實도 公訴狀 冒頭에 記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政府에서 수차 의지를 밝혀왔듯이 庶民生活侵害事犯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勞動者의 피를 짜먹는 어떻게 보면 취직시켜 주고 돈받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처럼 道德的 感覺이 무뎠던 사람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勞動者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피를 빨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行爲입니다. 非人間的 行爲입니다. 그래서 엄단해야 될 事項이고 이것이 실사 構造的이고 類型的으로 저질러지는 犯罪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職業斡旋과 관련한 金品授受는 100萬원 안팎이라도 보통은 拘束이 됩니다. 이것 本委員 주장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 점에 대해 언급해 주십시오. 보통 拘束을 하는 事例를 많이 보았는데 이작은 前科도 있고 더우기 構造的인 것이 公訴狀 자체에서 짐작이 되는데도 不拘束했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檢察이 8個月동안 搜查를 끝냈던점 檢事가 세번이나 바뀌었던점 그래서 檢察의 상당한 소위 말하는 請託이나 압력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犯罪行爲가 組織的이고 또 權力의 庇護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케 하는 몇가지 정보들을 아울러 여기서 밝혀드리겠습니다. 86年5月 組合委員長選舉가 있었을 때 安全企劃部에서 候補가 그당시 5,6名으로 난립되어 있었는데

候補者들을 불러서 협박과 회유로써 出馬를 포기하는 무슨 합의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民主黨幹部이던 郭正出씨와 尹碩淳씨가 오민욱이라는 사람을 뺀까지 때리면서 여러 候補의 辭退를 종용했던 이런 윗지 못할 事例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公權力과 결합된 犯罪組織이라는 의혹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의 事例는 앞으로 本委員이 더욱더 調査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一方的 주장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언제 어느때는 國會에서 調査를 와주면 또는 勞動部에서 調査를 오면은 이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本委員이 만났습니다.

88年4月 總選時에 釜山 中區 統一民主黨 金光一候補의 아들이 납치되어서 테러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非理를 밝혀달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또한 여기 執行部の 實力者와 관계가 있는 暴力組織의 소행이라는 提報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는 本委員이 진실을 100% 밝힐 수 있는 資料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나 다만 公權力이 나서면 調査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事件은 未濟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勞動部の 職務가 과연 걱정했는가 勞動部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서 몇가지를 여쭙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釜山港運勞組가 職業安定法에 근거한 職業斡旋業 許可를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根據條項은 몇 條이며 언제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許可者로서 監督을 할 수 있다면 어떤 監督行爲를 勞動部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監督을 해왔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本委員이 지적한 公訴狀記載 犯罪事實에 의하면 業務上 背任으로 起訴가 되어 있습니까마는 이것은 소정의 職業安定法 第 16 條 該當行爲입니다. 상상적 競合이 되는 犯罪인데 檢察이 굳이 職業安定法을 썩 빠뜨려 놓은 것이 매우 의혹이 가는 이러한 事件인데 어떻게 檢察에서는 어떤 方式으로 起訴를 했거나 간에 許可者

의 입장에서 볼때는 職業安定法違反行爲에 특떨어지는 構成要件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勞動部에서는 어떤 措置를 해야 하는 것인지 取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調査를 해 보았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措置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質問을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지적한 것은 여러가지 事例를 지적했지만은 그 문제의 본질은 우리 社會에 아직까지 이와 같은 不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組織이 있다. 그것도 勞動組合組織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市民들로 부터는 暴力組織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까지도 가지고 있다. 아까 監查報告書에 몇마디 인용한 이런 構造的 非理가 사행되고 있다. 84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權力이 이를 庇護하고 있는 의혹이 매우 짙다. 이렇게 本委員은 주장합니다. 하는데 勞動部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答辯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4年 特別業務監查報告 이후에 사정이 달라진 점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하시려면 그 이후에 어떤 調査를 해왔는지 事後業務監督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報告없이 그런 答辯은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不正과 非理가 있다 없다 構造的이다 아니더라고 答辯해 주시고 만일 本委員과 見解를 같이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對策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워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答辯해 주시고 그 다음 港運勞組에 관한 문제는 그쯤에서 質問을 끝내겠습니다.

역시 資料에 대한 一般的인 문제인데 지난 1月13일에 要請했던 資料가 나오지 않았다 하여 어제 다시 本委員이 要請했던 資料中에 三星重工業 勞使紛糾와 關連해서 실제 勞動組合을 設立했는가 與否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總會가 있었는가 기타 實質的인 活動與否에 관한 調査資料를 밝혀달라 이랬는데 主務官廳인 勞動部가 왜 남한테 떠맡겼니까 여기 答辯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慶尙南道에서 調査한 결과에 의하면 全員 參席하여 適法하게 設立總會開催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答

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안되어서 勞組設立妨害行爲이기 때문에 勞動部에서 調査할 義務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勞動部가 調査한 결과를 報告해 달라고 했지 누가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不實한 답변을 하게 된 原因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項 使用者의 勞組運營에 대한 支配介入與否에 대한 答은 여러가지로 지금 忠武支廳에서 調査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 項目을 보면 本委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不當勞動行爲與否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不當勞動行爲라는 것은 支配介入의 與否를 했는데 檢察에서 調査하고 있는 것은 支配介入 與否에 대해서는 전혀 調査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使用者의 不法行爲에 관해서는 勞動部가 調査를 해달라 해도 일체 調査를 하지 않거니와 本常委에서 國會議員이 調査를 요구하고 결과를 報告要求해도 왜 전혀 答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점 東問西答을 한 이유를 밝혀주시시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盧仁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李海瓚委員은 一問一答을 하셨죠. 答辯을 다 들었습니까?

○李海瓚委員 答辯 다 들었습니다.

○委員長代理 盧仁煥 그럼 金炳龍委員하고 방금 盧武鉉委員 質疑에 대해서 政府側答辯을 들어야 하는데 答辯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그럼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33分 會議中止)

(17時2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委員質疑에 대한 政府側 答辯을 듣겠습니다.

勞動部長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勞動部長官입니다.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金炳龍委員께서 現代重工業勞使紛糾의 수습 대책에 대하여 質疑가 계셨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現代重工業과 豐山金屬의 勞使紛糾로 인하여 勞動委員會에

계시는 委員님들께서 現地에 직접 가서서 그 실상을 조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1月23日 勞動委員會 內務委員會 連席會議를 하시면서까지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해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操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중하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金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勞動部에서는 現代重工業 노사분규에 대한 수습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地方勞動官署를 指揮하여 事態의 수습을 促進하였으나 解決의 실마리가 보이지 아니하여 지난 1月17日 本部에서 特別指導班을 現地에 파견하여 분규의 수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主要爭點이 團體協約未合意 4個項과 徐泰洙 現委員長과 李元根 勞組副委員長 勢力間의 勞動組合 組織紛糾로 要約될 수 있습니다.

勞動部の 指導方向은 國家重要基幹產業體의 長期 操業中斷을 解除하여 早期 稼動을 目標로 우선 會社側에 대하여는 操業中斷措置를 解除하도록 指導하는 한편 勞組側에 대하여는 相互對話를 主선하고 組合을 正常化 시키도록 主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會社側은 2月11일부터 조업중단을 해제하고 정상작업에 임하려 하고 있으며 파업지도부의 反對에 불구하고 현재 부분조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조 양측에 대하여 끈질긴 이해와 지도로서 徐泰洙 組合長側 5名과 李元根側 지도 부간부 5名을 노조 사무실에서 1차회동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의 차이점으로는 徐泰洙 委員長은 먼저 李元根 副組合長側이 집행부에 복귀하고 미타결 상태에 있는 단체협약을 마무리 짓고 사퇴할 것을 비치는데 반하여 李元根 副委員長側은 지난해 12月22日字 조합장의 권한위임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도록 주장함으로써 상호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蔚山市 當局과 地方勞動官署를 감독하여 2차에 걸쳐 勞·勞紛爭을 조정시도하

도록 하였으나 양측의 주장불일치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勞·勞간에 대화를 주선하여 노조 정상화를 기하도록 계속 지도하는 한편 조속히 조업이 정상화 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豐山金屬 勞使紛糾에 대한 收拾對策에 대해서도 金委員님께서 質疑하셨습니다.

同社 紛糾의 수습을 위해 최근 勞使兩側의 交渉委員 6名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月31日자로 회사측에서 25名을 해고조치하여 분규수습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勞動部에서는 그간 2次に 걸쳐 특별지도반을 파견 노사양측의 정상조업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해고재심사 과정에서 회사측이 해고자 범위를 축소하고 노무관리 전담자(이사1명 부장2명)을 신규임명하였으며 현 노조부지부장 등 노조측 교섭대표와 회사측간의 협상분위기를 계속 조성하여 분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大宇精密의 분규에 대한 수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委員님 여러 분들에게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大企業들이 아직까지 紛糾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러한 答辯을 올리게 된 것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同社 勞動組合長이 업무방해등 혐의로 拘束된 이후 當部 蔚山地方事務所의 지도로 勞組側 희상대표단을 구성하여 勞使交涉를 가졌으나 賃金引上등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결렬된 바 있습니다.

그간 當部에서는 本部 特別指導班을 파견하여 事業主側에게 분규수습 노력을 촉구하였으나 勞組側에서 구속된 組合幹部에 대한 告訴 取下등을 요구하는데 반해 會社側은 勞組側에서 우선 파업을 철회하고 正常操業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분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當部에서는 앞으로도 노사협상을 계속 주선하여 분규가 조속히 타결되도록 하겠읍니다.

三星重工業 籠城勤勞者의 일부 入隊問題 등에 대한 勞動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主要防衛産業體에 근무하던 兵役特例者가

퇴직되었을 경우 入營措置하는 것은 兵役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는 入營 연기해주고 어느 경우에는 연기해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 部에서 파악된 바로는

첫째 入營令狀이 발부되기 전에 根據書類를 첨부하여 연기신청하는 경우와

둘째 入營令狀 발부후에 法院의 假處分 결정이 수리된 경우에는 연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애전자 勞組幹部의 구속사실과 非勞組員 출근제지 및 분규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애전자 勞組의 문화부장 백복남이 88年9月30日 不法籠城과 관련하여 拘束起訴되었다가 同年 12月20日에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88年10月19日 籠城勤勞者와 非籠城勤勞者의 충돌등에 의한 사건과 관련하여 勞使兩側은 總 14件을 상호 고소 고발되어 南部署 및 南部支廳에 계속 수사중에 있습니다.

當部에서는 신애전자 분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會社內 勤勞者 約 150餘名에 대하여는 復職豫定勤勞者를 수용하도록 지도하겠으며 組合長 박종숙등에게는 규약변경으로 全勤勞者를 勞組에 가입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후 組合總會에 의한 信任投票를 통하여 勞組自體紛糾를 해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기타 籠城勤勞者賃支給問題 復職問題 등은 勞使交涉를 통하여 해결토록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釜山 港運勞動組合의 非理에 대한 勞動部의 處理方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釜山港運의 非理與否에 대하여 當部에서 파악한 內容은 없으나 無記名으로 民願이 있어 管轄行政官廳인 釜山市에 移送하여 調査中에 있으며 釜山地方檢察廳에서 搜查를 進行하고 있어 違法事實 有無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當部 蔚山地方勞動事務所의 放火事件에 대한 경위를 물으시면서 석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當部 蔚山地方勞動事務所에 89年2月19日 14時頃 화염병투척으로 2層 管理課에 책상의 자동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화염병 투척을 한 사람은 검거하지 못함으로 상세히 알수는 없지만 당시 살포된 油印物과 투척 당시의 상황을 종합판단컨대 勞動問題를 해결함에 있어 勤勞者側의 이해와 협력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측됩니다.

今後 當部 全職員은 심기일전하여 勤勞者 保護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勞使는 물론 國民一般의 신뢰회복으로 이와 같은 불미한 事件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半月再活作業所 作業員 紛糾關聯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야시는 바와 같이 當部 傘下 勞動福祉公社의 職業再活 施設인 半月再活作業所에서 89年1月16일부터 1月25일까지 作業員 64名 全員이 手當引上과 同 作業所의 永久職場化 또는 退所時 就業保障을 要求하며 作業을 拒否하고 構內에서 籠城을 한 事實이 있습니다.

이들의 要求事項中 手當引上등 要求에 대하여는 基本作業手當 2萬원 一律引上및 獎勵手當(成果給 新設 月 2萬200원 정도 등으로 88年度에 比하여 平均 34% 정도를 引上하였습니다.

그러나 同 作業所의 永久職場化 要求에 대하여는 同 作業所의 設立趣旨가 重障害者에게 自活能力을 培養시켜 社會復歸를 促進하는데 있고 또한 여타 重障害者에게도 이러한 技能習得의 機會를 골고루 주어야 한다는 點을 감안할 때 同 作業所의 永久職場化 要求는 受容할 수 없습니다.

政府는 重障害者의 生活安定을 위해 生活定着金 貸付事業과 子女獎學事業을 實施하고 있으며 이들의 就業保障을 위해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半月再活作業所와 같은 職業再活施設을 今年中에는 光州地域에 建立할 計劃이며 앞으로도 年次計劃으로 繼續擴充해 나갈 計劃입니다.

다음은 盧武鉉委員께서 質問이 계셨습니다.

우선 지난 國政監査 이후부터 지금까지 勞動部에 資料를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성의껏 또 있는 그대로를 제출못했다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勞動部로서는 委員님들의 議政活動에 필요한 모든 資料를 정중하게 상세하고 명확하게 드리도록 하겠

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答辯에 들어가겠습니다.

釜山港運勞組 組合員의 特別監査 要請件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總括적으로 쪽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4年3月 勞動部에서 釜山港運勞組에 대한 特別監査를 實施하였고 그 當時 勞動部에서는 구연춘을 責任者로 하였습니다.

現在 特別監査 結果報告書를 當部에서 保管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나 確認을 해서 委員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以後 當部에서는 釜山港運勞組의 問題點이 同 監査結果 報告書에 따라 대부분 시정되고 그 以後 別다른 問題點이 發生되었다는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88年10月과 11月 2회에 걸쳐 當部에 接受된 特別監査 要求 申請서는 87年 勞動組合法 改正으로 勞動組合監査權이 폐지되었고 管轄官廳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釜山市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資料提出에 있어서 時日이 촉박한 관계로 부실한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當部에서는 管轄官廳인 釜山市의 지금과 같은 사항을 재확인하여 적절한 對策을 강구하도록 措置하겠습니다.

港運勞組의 勤勞者 供給事業 許可日字 根據 및 職業安定法 違反事項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釜山 港運勞組는 職業安定法 第17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82年7月6日 勤勞者供給 事業을 허가하였습니다.

勤勞者 供給事業은 港運勞組所屬 組合員을 上下車 등 荷役現場에 공급하는 것이며 非理에 대하여 평소 진정이나 當部地方 勞動官署의 報告는 없었으며 勤勞者 供給事業에 대하여 特別監督을 89年2月14일부터 실시토록 所屬地方官署에 지시하였습니다.

特別監督 실시 結果가 報告되는대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三星重工業에 대하여 要求資料와 관련하여 지적인 事項을 答辯드리겠습니다.

三星重工業의 既存勞組가 適法하게 설립되었다는 것은 慶尙南道로부터 보고 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同社의 不當勞動行爲與否에 대하여는 현재 檢察에서 搜查中이며 會社의 勞組에 대한 支配 介入與否에 대하여도 搜查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 盧武鉉委員 나중에 補充質問하겠습니다.
- 金炳龍委員 現代重工業에 特別收拾委員을 現地に 파견을 해서 收拾對策을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서 특별한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지금 冒頭에서 말씀드린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現代重工業의 操業再開와 勤勞者들이 자기 職場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간다고 저희들은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勞勞間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局長 課長이 가서 그 동안에 서로 한 자리에 對坐하지 않던 것을 우선 對坐해서 말할 수 있는 對話의 창구도 열었고 여하튼 全體的인 분위기로 보아서 收拾의 실마리를 저희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말씀은 못드리더라도 제가 노력하는 결과를 그때그때 報告드리겠습니다.

- 金炳龍委員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常任委에서 3月初旬에 다시 勞使兩側을 여기서 訊問할 계획으로 있으니 그때 묻기로 하고 豊山金屬의 勞使가 交渉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交渉委員은 몇명씩 했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6명씩 했습니다.

○金炳龍委員 우선 解雇된 사람들은 빨리 會社와 어떤 협의를 해서 復職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大宇精密告訴取下問題도 역시 政府側에서 좀 강력하게 추구를 해서 하루빨리 이 분들이 자기 원위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애전자 勞使問題입니다. 이 문제는 會社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九老工團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고 또 九老工團에서 全勤勞者들 또 全使用者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政府次元에서 지금 勞使가 交渉중에 있다라고 長官이

말씀하셨음이다마는 적당 개입을 해서 拘束되었다 나온 분들이 자기 위치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全國病院聯盟이 지금 設立을 해서 이 분들이 政府의 認准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全國病院勞聯에 가맹한 組合員은 約 3萬5,000名 정도로 알고 있고 또 韓國勞總에 이 분들이 가맹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聯盟으로서 設立이 되지 않는 이유는 勞總이나 또는 當該聯合勞動組合에서 承認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同一業種에 3萬5,000名정도 된다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聯盟으로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條件을 갖췄다. 이렇게 보아서 이 분들에게 대해서는 政府나 勞總이나 또는 當該 產業別 聯合勞動組合하고 협의를 해서 合理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政府가 좀 앞장서서 주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勞動部長官 張永喆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令培 盧武鉉委員 補充質問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盧武鉉委員 아까 無記名이라 釜山市에 移牒했다고 얘기한 부분 報告資料가 부실했다거나 또는 고의가 있었던 없었던 허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答辯이 없었어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고의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린대로 어제 그런 말씀이 세졌고 오늘 이랬으니까 資料準備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84年度監査資料에 대한 것은 文書로 다시 한번 찾아서 있는 그대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無記名の 呼訴文같은 것은 어떻게 진작 찾아지고 業務監査 結果報告같은 것은 진작 안찾아집니까?

三星에 대해서 調査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勞動組合法 第39條 소정의 不當行爲與否를 調査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檢察에서 立件 送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勞動事務所에서 그 부분 立件 해가지고 送致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搜查중에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것이 아니고 勞動事務所에서 조사한 調查結果를 送致意見書를 해가지고 주시면 지금 저희 委員會로서는 不當勞動行爲가 되었는지 會社의 介入支配與否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常任委活動을 合理的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資料는 안주고 엉뚱하게 檢察에서 調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勞動事務所에서 한 것을 달라 했는데 檢察은 왜 끌고 들어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내일 報告를 드리지요.

○**盧武鉉委員** 그리고 아까 金炳龍委員 말씀중에도 그렇고 李海瓊委員 말씀중에도 그런데요. 現代勤勞者나 安康勤勞者들이 이제 자기 職場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분위기는 밖에서 덜다덜다 춤고 배고프면 저희들이 안들어가고 별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1月15일에 無勞動無賃金 해가지고 한푼도 못받는다라는 것을 勞動部에서 강하게 발표하고 企業家들은 버티어라 이랬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勞動部가 그런 勞動部는 아닙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無勞動無賃金에 관해서 지금까지 合理的이고도 理論的인 근거가 없다는 그런 諸般報告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勞動研究所에서는 月間 約 400권의 資料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無勞動無賃金原則이 옳지 않다보고 調査 研究된 報告資料 일체를 勞動研究所에 부탁해서 수집해서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無勞動無賃金에 대한 批判的 理論에 대한 반박근거같은 것도 좀 마련해가지고 내일은 政策討論을 한번 해 봅시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예. 알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적어도 本委員이 느끼고 있기로는 勤勞者들 춤고 배고프면 풀죽

으면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港運問題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局長 어디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勞政局長으로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나오셔서... 조금 전에 문서보고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다는 분이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勞動部에서 작성한 것 맞지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措置方向 해가지고 監査結果를 管轄官廳인 釜山直轄市에 이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이첩인데 결국 勞動部에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長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대부분 시정이 되었고 그 이후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報告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報告書에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制度改善에 있어서 第1단계 措置가 있고 그 이후에 단계적 措置가 제2단계 措置까지 나와 있습니다. 1단계 措置 및 2단계 措置는 勞動部에서 立案한 이상 그리고 대부분 시정되었다고 했는데 시정된 것을 그 이후에 확인하고 報告받고 확인한 資料주십시오. 안그러면 長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요?

그래 여기에는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숙제를 다 풀었다면 資料를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張永結** 그런 것을 1단계 2단계 措置를 하면 그대로 措置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문제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86년에 勞組幹部들 상호간에 납치사건 모르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알아오겠습니다.

○**盧武鉉委員** 長官님 재직 전이니까...

문제는 내가 答辯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이 報告書 내용을 보면 事後措置가 쪽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서류도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금방 그렇게 그 이후에 아무런 말쟁이 없었다고 答辯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事後措置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이후에는 말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해서는 누가 長官한테 그렇게 報告했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죄송합니다.

盧委員님! 釜山港運勞組에 대한 것은 金炳龍委員께서 質疑하셨고 또 盧委員께서 84年 이후부터 86년에 대한 것을 상세한 質疑를 하셨는데 제 자신이 책임회피가 아니고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가지고 答辯드리는 것이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조사해 보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長官에게 묻는 것은 완전히 시정되었다고 報告했습니다. 이 시정되었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뚝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내일 86년에 있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다음 本委員이 質問한 것은 88年10월에 特別監査要請이 들어 왔다는 사실자체가 말썽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만 읽어보면 84年の 완벽한 재판인데 이 特別監査要請을 管轄官廳인 釜山市로 이첩하게 된 것은 어느 局 所管事項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 勞政局所管입니다.

○**盧武鉉委員** 84年度の 監査報告書는 勞政局長이 작성한 것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 당시에 勞使指導官이었는데 그때 제가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報告書를 써내고 이것 局長이 썼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몇年 전 것이기 때분에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해 주셔서 제가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으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것 조사할 때 며칠 걸렸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아마 1주일쯤 걸렸을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84年度에 1주일...

여기 표현대로 그때 무슨 소신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社會公益을 현저히 저해했던 사건이라고 이 엄청난 非理를 조사를 해가지고 報告를 한 公務員이 資料要請에 대해서 長官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 勞動部에는 이와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公務員이 없었음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내게 하는 그런 부실한 業務處理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88年10월에 特別監査要請을 접수해서 처리해야 될 主務局은 勞政局인데 우연한 일이겠지만 勞政局長이 과거에 직접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적어서 그때 지적되었던 非理가 다시 완벽하게 재발되었다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83年度에 減員이 돼야 될 사정인데 1,259名을 신규 가입시켜서 사람장사 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다시 이번에 지적되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시 組合員을 우선해야 되는데 이것도 무시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번에 다시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管轄官廳에다가 아무런 직접적인 調査도 없이 管轄官廳에 던져 버리면 그만입니까?

이것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 감독은 釜山市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一般的인 勤勞監督의 권한은 勞動부에 있는 것 맞지요? 勞動監督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죄송합니다.

그것은 勞動監督할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盧武鉉委員** 예. 좋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사실 제가 그 報告書를 5年 전에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公務員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는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하지만 몇年 지나면 상세한 내용은 잊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 盧委員님께서 지금 가지고 質疑하신 내용을 盧委員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저는 盧委員님이 일개워 주시는 것을 들어가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은 그 報告書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은 보존연한이 3年입니다. -대충

은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찾아봐라. 일단 보존연한이 지나간 문서는 소각하는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문서창고에 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報告書는 단행본으로 나왔던 것이니까 혹시 지하문서창고에 있을지 보든다 그래서 사실 최종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밤늦게 들어가서 지하문서창고를 뒤지다가 결론을 못보고 우선 찾고 있는 도중이라는 報告를 드리자고 해서 오늘 나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그 점은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長官께서 答辯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물었던 것은 이와같은 組織的이고 構造的인 非理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정말 감감하게 모르시는지...

○勞動部長官 張永喆 사실 저는 오늘 말씀 듣고 처음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勞動組合 運營도 기본원칙대로 자유스럽게 運營이 되어 되지만 勞動組合 運營 자체가 非理를 생산하는 勞動組合 運營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職業安定法에 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2月14日 字로 저희 地方官署에 감독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일단 그것은 管轄官廳인 釜山市에 昨年 10月 것을 이첩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도 報告를 받아야 되겠고 우리 勞動部 自體에서도 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報告를 받아보고 報告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地方官署가 아니고 아까 몇가지 本委員이 지적했습니다.

檢察이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不拘束으로 처리했다 그것은 公務員이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많은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地方 勞動廳 단위에서 이 문제를

외풍의 영향없이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래서 두가지 아닙니까? 첫째 昨年 10月에 釜山市에서 있었던 사항을 저희들이 報告를 받고...

○盧武鉉委員 내가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本委員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것은 中央部署에서 직접 監査를 하지 않으면 외풍때문에 제대로 搜查가 안되는데...

○勞動部長官 張永喆 일단 제가 2月14日 字로 지시를 했으니까 그 報告를 받아보고 미흡하면 저희들이 다시...

○盧武鉉委員 長官님께서 적당하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本委員이 이 문제때문에 매우 곤욕을 당하고 있어요. 勞動動向報告에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지난주 말경에 本委員이 港灣勞動者들을 상대로 해서 設問을 냈습니다. 직접 근무하는 勞動者들의 증거제시가 없으면 이 이상 더 이 문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어제부터 실력 행사를 합니다. 勞組執行部에서 勞動者들을 대거 동원해서 本委員이 과거에 경영했던 辯護士事務所에 와서 아주 폭언과 난동을 부리고 갔고 오늘도 200餘名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갔습니다. 혹시 勞動事務所에서 動向報告書 올라온 것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제가 사실은 1주일 동안 國會에 나오고...

○盧武鉉委員 勞動者들이 勞動事務所같은 데 가서 무슨 일하면 즉각 拘束시키지 않습니까?

國會議員이 地方에 주재해서 이와같은 일을 하고 있는... 國會議員도 그 業務가 순수하게 公的인 業務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자기 地方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부정과 비리의 존부에 관한 조사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와같은 침해행위가 있는데 대해서 물론 檢察이 해야 되겠지만 勞動部에서 動向報告도 한개 안받아 주면 그 地方事務

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제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長官님! 부탁하십시오. 하나 좀 봐 주십시오. 이것 확실하게 勞動部 本部에서 확실하게 나서서 뭔가 좀 해주지 않으면 國會議員이 그 앞에 가서 勞動者를 한사람 한사람 만나서 조사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막강한 檢察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地方官署에 맡겨놓고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勞動部에서 아무 答辯이 없으니깐 일단 補充質問은 마치고 대단히 미안합니다하는 議事進行發言을 얻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이 會議가 끝나기 전에 다른 분들의 質疑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勞動部長官 조차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事案에 관해서 그 중대성을 함께 論議하고 國會 常委 차원에서 조사활동을 펴주실 것을 요구하는 調査案을 發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動議案을 發議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한 시기에 委員長님께서 주시면 本委員이 提案說明을 드리고 아울러서 動議案을 提案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委員님께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事案이 있다고 판단해서 動議하실 의사가 있으면 하실 수가 있는데 會議進行 또 질서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議事日程 質疑와 答辯을 마친 다음에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서 네 委員의 質疑에 대한 長官의 答辯을 듣고 또 補充質疑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質疑順序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은 李康熙委員 質疑해 주시길 바랍니다.

○李康熙委員 民主正義黨 李康熙委員입니다.

本委員의 質問은 一括質問에 一括答辯을 바라면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6.29 이후부터 民主化 욕구로 분출되는 과정에서 勞使問題가 상당히 급격해지므로 인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經濟問題가 둔

화되고 또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에 많은 여러가지 우려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勞動問題의 主務部處인 勞動部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좀더 다른 차원에서 行政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먼저 부탁드립니다.

勞動部 業務報告 12 페이지 인신매매 등 취업 부조리 단속결과 612件을 적발해서 司法處理가 262件 行政措置 350件으로 處理하였다고 했는데 그 司法處理 대상하고 行政措置에 대한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12 페이지에 보면 民間職業訓練院의 시설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4 個所에 20億원을 용자해 주었다고 報告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民間職業訓練院은 有料施設로 되어 있어서 訓練費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政府側에서 이 4 個所를 지정해서 용자를 20億 해준 것은 어디어디냐? 또 용자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 페이지입니다.

勞動部 業務報告에 今年 봄 賃金引上交涉하고 관련해서 勞使·政 懇談會를 주관하고 있다고 報告가 되어 있고 또 그것에 관해서 상당한 기대를 本委員도 하고 있습니다.

(金令培委員長, 盧武鉉幹事와 司會交代)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과연 어떤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실효성으로는 어떤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되어서 이에 대한 그동안 추진된 事例와 그에 대한 실효성을 좀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8 페이지 地方勞動官署에 勤勞者 相談補強을 위해서 勞動相談室을 운영하고 있다고 報告가 되어 있습니다.

그 勞動相談室에 勤勞하는 職員들이 어떤 相談能力을 갖추고 있는지 本委員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많은 委員님들의 지적이 계셨지만은 無勞動 無賃金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있는 僞裝廢業問題라든가 또 是救社隊問題라든가 여러가지의 새로운 懸案點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勞動相談室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풀어 나가고 또 意見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적어도 이런 위치에 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여기 勤務하는 要員들은 어떤 資格要件을 가지고 充員을 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그러한 相談所에 적어도 1個 相談所에 몇名씩의 要員이 현재 勤務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셨으면 그런데 活用을 하고 또 그런 데의 도움을 받은 그런 勞使間의 慣行을 정착시킬 수 있고 그런 弘報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18페이지에는 이것에 이어서 事業場 설정에 맞는 自體相談室을 設置토록 勸獎한다고 이렇게 여기에 報告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前者에 質問드린 대로 이런 것이 상당히 정착되고 또 勞使問題에 도움이 되고 實效性을 찾는다면 이런 事業場의 설정에 맞는 自體相談室을 設置하라는 勸獎만으로 과연 實效性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의문이 되어서 이것은 만약에 前者에 質問드린 것이 상당한 效果를 거두고 있고 또 實效性을 거두고 있다 한다면 아주 勸獎事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義務化시키는 制度로는 어떻게 하는 것도 아울러서 意見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最低賃金制 여기 報告가 나왔는데 얼마전에 最低賃金制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 후에 政府의 弘報가 부족하다고 해서 勤勞女性들의 68.5%가 이 最低賃金制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報道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政府에서 아무리 좋은 慣行을 정착을 시키고 또 새로운 勞使間의 일이 발생하는 것을 적어도 勞使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勞動部로서는 弘報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시가 되는데 이 最低賃金에 대해서는 그간에 論難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勞使政에 대한 異見이 상당히 심각히 대두되다가 어떤 一方的인 결정에 의한 아쉬움도 낳고 今年에 最低賃金을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勞動者들이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 적어도 68%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은 最低賃金制에 대한 效果的인 하나의 運用事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弘報對策도 좀 勞動部가 세워주는 대신에 그에 대한 앞으로 政策樹立은 어떻게 하고 계신냐 하는 것도 이 기회에 答辯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바라는 것은 勞使問題가 난 후에 가서 그것에 대한 問題點이 어느 一方的으로 치중된 것 같은 감을 항상 우리는 많은 論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 적어도 政府次元에서 勞使行政이 앞서 이끌어 가는 그러한 啓蒙이나 弘報 선에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것으로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하나 끝으로 주문드리면서 이상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盧武鉉 다음에 李相洙委員님 質問해 주십시오.

○李相洙委員 平民黨의 李相洙委員입니다.

저는 質問의 성질상 一問一答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答辯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質問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나중에 答辯을 해 주십시오.

우선 勞動部에서 現代重工業勞使紛糾를 타결하기 위해서 직접 特別班을 내려보낸 일이 있죠?

○勞動部長官 張永喆 예.

○李相洙委員 勞組側과 會社側을 한자리에 이렇게 모아놓고 仲裁를 해 본 일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李相洙委員 어떻습니까? 지금 特別班이 내려가서 한 일들을 보면 서태수 執行部하고 李元建 現執行部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해 주는 것만 했을 뿐이지 정작 協商의 한 당사자인 會社와 勞組는 한번도 이렇게 만나게 한일이 없어요.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 紛糾를 勞勞紛爭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勞動者들간의 組織紛糾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現代重工業의 組織紛糾의 本質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한 勞勞紛糾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것이 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張永喆 제가 勞使의 문제와

勞勞問題 그것은 같이 얽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어느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시는가요?

○勞動部長官 張永結 우선 勞勞問題가 해결이 되어야 이 交涉相對에 대한 어떤 正當性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勞勞問題에 대한 해결은 해결대로 하면서 그리고 事業主側하고도 우리 對策班에서 가서 계속 절충을 하고 중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論理的으로 보아서 합당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알아 보니까 우선 實勢인 執行部를 인정하는 문제도 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可能性이 있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總會召集權者 指名要請을 해서 李元建 執行部가 法的으로 執行部가 될 수 있는 그런 可能性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紛爭이 가장 큰 要素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解雇者들에 대한 復職問題 그 다음에 爭議期間동안의 賃金問題였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賞與金問題도 자신들이 操業하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會社가 解雇者들에 대해서 復職만 시키고 노워크노페이問題도 그 原則을 비껴나가면서 약간 慰勞金名目으로 賃金を 주면은 紛糾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勞動部에서 진정으로 紛糾解決에 노력하려고 한다면 會社에 권유해서 그런 측면에 관한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急先務 아닌가요?

○勞動部長官 張永結 그래서 解職勤勞者問題 8名中에 4名이 復職이 되고 4분이 지금 復職이 안되었는데 두분은 他分野에 復職을 하겠다 하는 것을 서로 意見交換이 끝나고 나머지 두분은 原職이 아니면 復職을 안하겠다 하는 사태에서 사실은 불행하게도 이 운집事件이 나서 그렇습니다.

또 지금 團體交涉上의 어떤 賃金問題에 대해서도 會社하고 저희들은 여러가지로 중용을 그동안 會社側에서도 사실 우리 本部

局長하고 課長들이 많이 만나 가지고 正常化에 대한 모색을 계속 勸告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런데 지금 解雇者 2名이 問題인데 會社에서는 生存權的인 차원에서 原職에는 안되고 會社의 다른 部署에 復職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 勞動部에서 指導力을 발휘해서 그냥 原職에 두사람 復職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나요. 그 중요한 韓國의 가장 큰 重工業이 지금 操業을 중단하고 있어서 國家的인 어떤 면에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勞動部長官께서 충분히 그 정도의 문제가 걸려있다면은 그것은 積極的으로 나서면은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 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노워크노페이問題도 지금 보너스 100%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19萬원에다 조금만 더 보태서 주면은 해결 可能性이 있습니다. 지금 會社가 하루 操業中斷하면 40億씩 손해본다고 하는 마당에 충분한 可能性이 있는데 왜 勞動部에서는 그런 쪽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지?

○勞動部長官 張永結 사실은 19萬원 問題는 제일 처음에 연발보너스 100% 문제가 되고 처음에 12萬원 문제가 되어가다가 19萬원으로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에 사실은 投票를 해 가지고 그것이 否決이 되어가지고 문제 발단은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李相洙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정을 제가 충분히 알고 正常化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現代問題는 그런 각도로 좀 노력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三星問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아까 나왔으니까 徵集問題부터 묻는데 지금 豊山에도 10名이 解雇되어 가지고 徵集令狀이 나와있는 상태에 있고 三星 重工業도 9名이 지금 令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리고 防衛産業體에 5年만 勤務하면 兵役이 면제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勞動部長官 張永結 예.

○李相洙委員 특히 三星重工業 경우는 거의

勤務한 期間이 4年10個月 4년9個月 이래서  
만입니다. 2個月만 더 勤務하면 兵役을 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解雇가 되니까 兵務廳에서 徵集令狀이 나왔  
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勞動部長官 張永結 예.

○李相洙委員 참고로 말씀드리면 3분의 경  
우는 김일태씨가 4年8個月 勤務했어요. 변성  
준씨는 4年10個月 勤務했습니다. 정인영씨는  
4年5個月 근무했어요. 거의 4년을 勤務한  
사람이 다섯사람 됩니다. 몇個月 더 勤務하  
면 兵役惠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면 어떻습니까? 一般的으로 勤勞者를 解雇  
했을때 그 解雇가 無效가 되면 溯及的으로  
모든 것이 無效가 되죠. 그 점에 대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만일에 解雇가 無效로 판  
정되면 溯及的으로 無效다 이것은 맞죠?

○勞動部長官 張永結 예. 一般的으로 맞습니  
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만일에 88年12월에  
解雇했는데 89年 5월에 그 解雇가 無效로  
판정되면.....

○勞動部長官 張永結 委員님 죄송하지만  
그 質問은 우리 局長 편에 答辯하도록 해  
주십시오.

○李相洙委員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解雇  
의 溯及效는 인정하시는거죠?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예컨대 88年12월에 解雇되었지  
만 89年 3월에 解雇가 不當하다고 되었다면  
은 88年12월로 돌아가서 勤勞關係가 계속  
存置하는 것이죠?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예. 그렇게 생  
각합니다.

○李相洙委員 그렇다면 만일에 이 사람들의  
解雇가 不當하다고 해 가지고 無效化 되면  
은 이 사람들은 軍隊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정하시죠?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글썫 그것은  
兵役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李相洙委員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  
들의 解雇가 無效라고 하면은 解雇한 날짜  
에도 勤勞契約關係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서 勤勞者임에 분명하니까 防衛産業體勤勞者  
로서의 兵役特惠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

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一般的으로 저  
희 勤勞關係는 그런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  
신 兵役特例에 관한 事項은 그것은 저희  
所管이 아니라 제가 자신있게 答辯 못 올  
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아니 이것은 지금 勞動部가  
保護해야 될 勤勞者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  
사로 되어 있고 지금 勞總에서 籠城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有權的인 對答  
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저희들 바람은  
勤勞者를 保護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저희들 희망과는  
달리 法에 다르게 規定이 되어 있다면 저  
희들로서는 별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이  
렇게 생각이 듭니다.

○李相洙委員 法의 規定을 묻는 것이 아니  
고요. 지금 勞動部에서는 무수한 解雇事件을  
보아오지 않습니까? 解雇事件이 法院에서  
無效化되면 溯及的으로 無效기 때문에 全體  
的으로 月給을 다 받지 않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예. 賃金이라  
든지 여러가지 勤勞關係에 관한 것은 원상  
으로 回復되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한마디로 얘기해서 勤勞契約關  
係가 解雇 당시로 돌아가서 존재한다는 얘  
기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만일에  
이 사람들의 解雇가 無效라면 解雇 당시로  
돌아가서 勤勞者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은 勤勞者이  
기 때문에 兵役特惠를 받을 수 있는 입장  
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지금  
解雇당했다는 사실만으로 軍隊에 가서 兵役  
을 필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解雇가  
無效가 되면 勤勞者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그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예. 이해합니다.

○李相洙委員 더군다나 지금 4年10個月을 勤  
務해 가지고 2個月만 더 勤務하면 5年間  
勤勞해서 特例를 받는 그런 勤勞者가 있는  
데 解雇되었다고 해서 바로 兵務廳이 이렇  
게 徵集令狀을 發付하는 것보면 이것은 사

실 제가 볼때는 완전히 越權입니다. 그런데 勞動部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兵務廳에 한 번 항의를 하거나 建議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항의를 하거나 建議을 한 일은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이것은 분명히 越權이고 違法이죠?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글썽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所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事項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兵役法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特例를 받는 그런 條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한 다음에 내일이라도 答辯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판단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解雇事由는 三星重工業 경우는 7日間 無斷缺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昨年 11月17日 總罷業을 했기 때문에 無斷缺勤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유독 이 사람들만 指目해 가지고 解雇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解雇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解雇無效訴訟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解雇無效임을 다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勞動組合法을 보면 解雇를 다투는 勤勞者는 勤勞者로 본다 이런 規定이 있는데 이 規定이 여기에 해당되는 規定은 아니지만 그런 規定을 類推解釋하더라도 더더구나 지금 勤勞者들이 解雇를 다투고 있는 마당에 解雇된지 한 10日만에 바로 徵集을 시키는 것이 온당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勞動部の 見解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저희들로서는 역시 勤勞者를 保護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몇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解雇가 原因無效가 되면 모든 勤勞關係 등등은 원상으로 回復되지마는 이 兵役에 관한 限은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答辯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희들은 이번 政策質疑에서 이 문제에 대한 勞動部の 評價를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來日 政策質疑때 해줄 수 있습니까? 몇 時間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勞動部勸勞基準局長 金基德 來日 午前에라도...

○李相洙委員 그러면 來日 이 평가를 다시 듣고 관련된 質問을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三星問題를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勞動部에서 懸案主要勞使紛糾事例報告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事例報告를 했습니다.

지난번 勞動部에서 報告할 때도 역시 事例報告가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勞使問題가 일어나고 있는 三星에 대해서는 두번에 걸쳐서 전부 다 빠져 있어요.

三星問題가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懸案主要勞使紛糾事例報告에 보면 三星問題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있지요?

지난번에도 빠져 있더라구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答辯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이 懸案主要勞使紛糾事例중에 들어가 있는 業體들은 현재 操業이 중단상태에 있는 業體들이고 紛糾가 長期的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상당기간 操業이 중단되어 있는 業體만 중요시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勤勞者들이 밖에서 紛糾를 야기하고 있더라도 內部에서 평온하게 作業이 이루어지는 業體는 거기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터로라같은 곳도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일음 수공이 가는 면도 있는데요 木洞아파트같은 경우는 紛糾가 해결되었지만 나와 있잖아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지금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현재 警備員들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번져갈 염려가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三星問題는 87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동안 勞動部에

서 勤勞監督을 해본 일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지금 축석에서 答辯드리기 곤란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아야지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三星重工業에서 그동안 勞動部에서 勤勞監督을 몇번 했는지 내일 答辯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내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三星重工業에 勞組가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勞動部에서는 지금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어떤 근거로 있습니까? 한번 듣고 싶은데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방금전에도 答辯드린바 있습니다마는 慶尙南道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서 勞動組合이 설립되었다고 몇번씩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契約이라든지 設立總會 會議錄이라든지 일음 갖추어야 될 書類는 전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것은 설립당시의 문제인데요. 組合員의 名單 나와 있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組合員의 名單은 저희가 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우선 설립되었다고 보는 勞組는 몇 年度에 설립된 어떤 勞組를 말씀하십니까?

현재 설립되어 있는 勞組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設立 年月日하고 勞組數하고 한번 말해주세요.

하도 設立申告書를 많이 내가지고 도대체 어느 勞組가 정말 勞組라고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三星重工業의 勞動組合은 88年6月2日 設立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組合員은 18名이 設立總會를 해서 구성을 했고 현재 420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代表는 김무연이고 組織對象은 昌原 1工場 2工場 그리고 巨濟造船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좋습니다.

그러니까 88年6月2日 設立된 勞組가 현재 勞組로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勞組 組合員들이 420名이라고 하는데 名單 파악되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名單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慶尙南道로 하여금 名單提出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委員會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다마는 名單提出을 반지를 못했습니다.

○**李相洙委員** 勞動部에서 도대체 일개 組合의 名單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 사유를 145回 國會 臨時會에 資料로 제출한 5「페이지」에 보면 三星重工業 組合長 김무연이라는 사람이 組合員 名簿를 제출 못하겠다는 不可事由書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不可事由가 합당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로서는 組合員 名簿를 강제로 내도록 할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名簿를 강제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勞動部에서 勞組에 가서 書類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勤勞監督할때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動組合業務檢查權은 없습니다.

勤勞監督官은 事業場을 감독을 하지 勞動組合은 監督을 못합니다.

○**柳昇珪委員** 勞動組合法 30條에 있잖아요?

關係書類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고 있잖아요. 그것은 法이 아니에요? 法條文 아닙니까?

○**李相洙委員** 30條에 나와 있어요.

○**柳昇珪委員** 行政官廳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關係書類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李相洙委員** 條文에 없다 하더라도 勞動部가 더군다나 國會에서 지난번 會期때 名單



을 요청했는데 그것 하나 못 받아냈니까? 그렇게 三星勞組가 대단합니까? 어때요 바로 名單 파악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제가 보기에는 提出不可事由가 일응 근로자편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李相洙委員** 어떤 면에서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事由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보았는데 요 그것도 사유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李相洙委員** 어떤 점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 보다도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저희 重工業에서는 그동안 勞組主導權爭奪을 위한 紛糾가 19차례나 일어남으로써 正常的인 組合活動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88年6月3日 勞組設立以後 組合員 400餘名의 加入願書를 제출 받았으나 현 시점에서 組合員名簿를 제출하여 공개될 때에는 여타 勤勞者 및 第三者側로부터 협박 公갈 등 위험사태 발생위험이 있고 외부 세력과 결탁 公共機關 접근성으로 인한 勞使寡團氣 저해 및 勞組加入者들도 반발농성을 통한 勞勞紛爭의 再燃이 예상되어 조용하게 가라 앉는 本會社의 勤勞者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功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組合員名單을 제출하지 못함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本組合이 알기로는 組合員名單 提出은 法的事項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렇게 事由書를 써왔는데 일응은 이것이 사유가 되지 않는가 보아서 勞動組合法 30條에 의한 資料의 제출요구를 하지 않았 습니다.

○**李相洙委員** 勞動組合이 멋뻐하고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組合員의 名單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유가 상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합당한 이유라고 느껴집니까?

그 정도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해서 勞動部가 國會에서 資料提出을 요구했는데 물려 서가지고 더 이상 名單 내놓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일응은 저희가 그

것도 이유가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의 勞動組合法 30條 등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勞動組合은 勤勞者들이 自律的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어느 第三者가 개입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相洙委員** 방금 마지막 하신 말씀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勞動部는 第三者니까 勞使紛糾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勞勞紛糾은 勞使紛糾든 어느 調整機關이나 行政官廳이나 第三者의 介入없이 自律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이것이 자율의 문제입니까?

國會에서 資料要請했으면 一個單位企業의 單位勞組가 組合員의 名單을 못 낼 것이 무슨 이유가 됩니까?

어때요? 어떤 조치를 취하든간에 名單을 받아와서 國會에 제출할 수 있는지 물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씀인지 그것을 명확히 答辯해주세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李相洙委員님께 答辯드리겠습니다.

(盧武鉉幹事,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이것은 지금 勞動組合이 출선해서 名單을 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管轄行政官廳인 慶尙南道로 하여금 勞動組合法 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出要求權을 발동하든지 해서 그것을 입수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도록 조치를 하 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그 名單을 언제까지 國會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조속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우리가 이번 勞動委員會에서 다시 별도의 期日을 잡아서 三星重工業에 대해서는 직접 대표를 불러서 質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능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조속히 가능하면 이번 會期內로 제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李相洙委員 그 다음에 이 勞動組合總會를 개최한 사실이 있거나 事務室이 있거나 團體協約을 한 사실이 있나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團體協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李相洙委員 總會를 개최한 사실은 알아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總會는 總會會議錄이 올라와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것은 組合設立時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設立總會지요.

그 다음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은 하지를 않습니다.

○李相洙委員 勞動部에서는 지금 勞動組合의 設立과 관계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三星重工業에 현재 勞組가 있는지 幽靈勞組인지 이것 판단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報告를 해줄 수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일단은 판단 보고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법하게 설립된 것이고 勞動組合活動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판단은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판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그 다음에 지금 이 勞組가 88年6月3日 설립된 勞組라고 말씀하셨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저희 자료에는 6月2日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事由書에는 6月3日로 되어 있군요.

○李相洙委員 6月2日 申告해가지고 6月3日 申告證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李相洙委員 그런데 이 勞組는 認准書를 보았나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本部에서는 본 일이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本部에서 본일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인데 認准書 없이 勞組 設立되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왜 이 경우는 認准書 없이 勞組가 설립되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臨時國會에서도 제가 答辯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 勞動組合運營指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遠隔地에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上級勞組에 加入하겠다는 申請書寫本인 붙여도 申告證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認准書가 없더라도 거기에다가 이름만 써놓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遠隔地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저희 行政內規로 가지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遠隔地에 있는 上級勞組에 대해서는 勞組에 이름만 쓰면 認准書없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加入申請만 했다는 증명으로서도 認准書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규정을 두느냐 하면 사실 遠隔地... 地方에 있는 單位勞動組合이 사실은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설립을 해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本部組合에 왔다 갔다 하려면 비밀이 누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勤勞者의 團結權을 보호해준다는 취지에서 그런 조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어때요?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이 勞組는 6月2日 午後5時40분에 慶南道廳에 設立申告를 하니깐 그 다음날인 6月3日 초고속으로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月3日 金融勞組의 認准書까지 받아가지고 위재학씨 등 8名이 申告畢證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전날 設立申告 들어와가지고 이미 申告證 나갔다고 하면서 그 「케이스」는 반려를 했는데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에 맞는

申告證交付인가요? 시간적으로 보아도 우선...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이 아시다시피 勞動組合이 생길적에 서로 경합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다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勞動組合을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6月21日 午後5時40分에 신청했는데 다음날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認准書도 없습니까.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발부된 것입니까? 本委員이 볼 때는 勞動部地方事務所 慶南道廳과 會社가 상호 싸가지고 이와같은 일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데 88年6月의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勞動部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自體監査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認准書 없이 超高速으로 申告證을 주었는지 答辯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勤勞監督官廳이나 慶南道廳이 문제가 있다면 勞動部에서 조사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확인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다음에 資料提出을 요구한 資料를 보니까 88年12月5日 馬山地方檢察廳 忠武支廳에서 다음 내용의 不當勞動行爲 與否를 搜查중에 있습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 勞動組合法上 不當勞動行爲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부분에 관한 不當勞動行爲입니까? 그냥 勞動組合法上 勞動行爲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勞動部 地方事務所에서 먼저 조사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린 다음 支廳에 송치한 것인지 支廳에서 바로 搜查를 하고 있다는 말인지 勞動部 地方事務所에서 조사해서 송치했다면 어떤 부분을 조사해서 어떤 의견으로 올렸는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報告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李相洙委員** 本委員이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88年7月10日 위재학씨 등은 勞組를 설립하려고 했다가 전날 다른 勞組가 신청에 의해서 設立됐다는 말을 듣고 次善策으로 그 勞組의 支部를 결성하기 위해서 昌原 2工場과 巨濟에 支部

를 설치하고 그 먼저 세웠다는 勞組에 支部申請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세웠다는 勞組의 委員長은 아무런 措置를 취해 주지 않고 보낸 서류를 오히려 會社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會社에서는 支部設立을 주동했던 위재학씨는 東邦生命江陵支店에 보내고 이영수씨는 釜山支店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不當勞動行爲라고 보는데 支部設立을 시도했다고 轉補發令을 내렸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서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全般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사해서 다음에 三星重工業代表가 나와서 答辯하기 前에 本國會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다시 확인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다음에 金炳龍委員이 물었는데 이 病院勞聯에 대해서 아직도 申告筆證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言論勞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勞動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바로 勞動部所管입니다. 제가 커다란 政策的인 문제에 관해서는 勞動部도 限界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勞動部の 결단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선 病院勞聯이 지금 申告證을 못 받는 이유가 됩니까? 勞動部가 안 주는 이유가 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우선 全國病院勞動組合聯盟은 현재 설립되어 있습니다마는 適法性이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全國聯合勞動組合聯盟이 組織對象으로서 病院勤務勤勞者를 포용하고 있어서 適法하게 분리 설립하려면 우선 聯合勞聯에서 代議員大會를 개최해서 병원근무 근로자들을 組織對象에서 제외시키고 소속되어 있는 病院勞聯 근로자들이 다시 設立總會를 열어서 病院勞聯을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李相洙委員** 그렇다면 病院勞聯은 組織이 重複된다는 한가지 이유뿐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組織이 重複되기

때문에 上級勞聯의 認准證을 못 받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全國고무産業勞動組合聯盟이 88年11월에 聯盟으로서 申告證을 받았는데 그 組合聯盟은 聯合勞組聯盟하고 組織이 重複 안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원래 母體인 化學勞聯에서 분리를 승인해 주고 認准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化學勞聯하고의 關係에서는 組織이 重複했는데 化學勞聯에서 規約을 바꾸어서 組織이 重複되지 않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化學勞聯하고는 문제가 없고 聯合勞聯하고는 어떻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現代 産業社會라는 것은 그렇게 확연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21個 產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확연하게 組織의 重複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못합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聯合勞組의 規約에서 보면 고무關聯産業은 자기 조직의 「바운다리」內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全國고무産業勞動組合聯盟은 신발 製造業이나 재화점이 전부인데 그렇다면 組織이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것은 애매한 것 아닙니까? 딱 떨어지는데 왜 이 경우는 申告證을 발부하고 病院勞聯은 왜 申告證을 안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역시 聯合勞聯과 病院勞聯이 협의해서 聯合勞聯의 規約을 改正하고 適法하게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病院勞動組合은 전국 145個가 있는데 당초에는 145個 전부가 聯合勞聯에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病院勞聯으로 분리해서 나가겠다고 病院勞聯을 설립한 勞動組合이 63個 聯合勞聯에 잔류하고 있는 病院勞動組合이 82個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法的인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組織上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既存 勞動組合과 잘 협의해서 분리할 일이지 官廳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바로 지금 그 말씀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思考方式입니다. 勞動部가 1個 聯盟體의 어떤 利益에 얽매어가지고 판단을 못내린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局長님 말씀은 바꾸어 얘기하면 聯合勞動聯盟이 봐주는 聯盟體는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봐주지 않는 聯盟體는 못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全國고무生産勞動組合聯盟은 聯合勞組聯盟이 봐주니까 勞組設立이 가능하고 病院勞聯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봐주니까 設立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申告證은 누가 줍니까? 勞動部가 줍니까? 聯合勞組聯盟이 줍니까?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안하니까 勞動部가 신뢰를 못얻는 것입니다. 거창한 문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是正하세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勞動部의 입장은 一貫性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病院勞動組合聯盟이 기왕 設立이 되었으니 聯合勞動組合과 協議해서 정식으로 規約을 改正해서 분리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實務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聯合勞聯에 대해서 全國고무처럼 紛糾을 長期間 끌지 말고 해결하는 의미에서 規約을 改正하거나 認准證을 주라고 勞動部에서 촉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는 되도록이면 產別間에 紛糾없이 분가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촉구해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물론 있습니다. 公文으로는 사실 저희가 越權이기 때문에 촉구를 못하고 저희 實務者間에는 누차 촉구하고 권고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李相洙委員 우선 勞動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선제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선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第2의 事項부터 물겠습니다. 言論勞聯에 대해서 지금 申告證 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認准書를 발급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認准書는 어디서 받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韓國勞總에서 받습니다.

○**李相洙委員** 認准書가 없으니가 申告證을 교부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아까도 일핏 얘기 나 있는데 勞動組合法에 認准書가 있어야만 勞動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그렇게 明文의 규정으로 勞動組合을 新規設立할 적에는 上級團體의 認准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勞動組合法 13條 設立申告에 보면 設立申告書에 소속된 上級團體의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된 上級團體 명칭을 쓴다는 것은 어떤 上級團體에 必要的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이 자리에서 答辯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慣例의으로 韓國勞總이 탄생된 이후 아직까지 계속 上級團體의 認准書를 下級 各級 組織의 申告要件 設立要件으로 해서 申告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관례입니다. 그래서 관례도 저희 行政公務員한테는 중요한 先例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새로 勞動部長官이 취임하신 후에 勞動政策이 오히려 退行的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 勞動部長官께서는 認准書問題는 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慣例로써 해 온 것인데 그 慣例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認准書 없이 申告證을 발부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業務金融勞聯도 認准書 없이 申告證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李相洙委員님 말씀하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業務金融勞聯의 設立申告證은 사실은 認准證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법하게 設立하고 누차에 걸쳐서

入申請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認准證을 안주 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1年 半면서 9個月이상 半면서 勞總에 認准을 요구했지만 안주 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認准證 침부가 안되더라도 가입된 것으로 간주해서 주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가기에 의해서 나간 것이고 前任 崔長官님께서 答辯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李相洙委員** 우선 條文解釋上으로도 아주 무리가 있는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14條나 13條에 소속된 聯合團體의 명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根據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이 勞動組合을 設立할 때 기재할 사항으로 소속된 聯合團體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 設立도 안된 단체가 우선 聯合團體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바꾸어 해석하면 이 條文은 앞으로 設立되면 어떠한 단체에 가입하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것은 해석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設立도 안된 實體가 없는 단체가 어떻게 上級團體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設立을 한 다음에 가입하라는 취지이지 設立되기 전에 가입하고 오라 우선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 條文의 해석을 소속된 聯合團體의 명칭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먼저 가입해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합시다. 하면 단순히 몇번 이렇게 上級團體에 認准書를 주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면 된다 라고 말씀했다면 이것은 명확한 認准書를 갖추라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勞動部가 충분히 裁量權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만일에 法的으로 반드시 認准書가 있을때만 교부하라고 되어 있다면 勞動部가 할 수 없다고 보겠어요. 霸東裁量行爲라고 보겠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들 가서 認准書 주라고 한번 가서 얘기해 봐라. 안되면 오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말은 認准書 없이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런데 단순히 구두로 가서 받아와라 해서 못 받아왔다. 그러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무금융관계의 前例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금융에 대해서는 저희 공식적인 입장에서 公文으로 몇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勞總關係者하고 언제까지 인준증을 주도복 하겠다는 타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인준증을 안 준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한 것 입니다.

그러나 言論勞聯인 경우에는 사실을 勞總은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言論勞聯에서 인준증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우리가 오랜 관례로 되어 있는 인준증 문제를 그것을 철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과거 勞動部長官께서 그 관례는 잘못 되어 있다고 하면서 또 法的으로도 근거도 없는 관례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관례이기 때문에 시정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왜 다시금 勞動部가 또 그 관례가 정당해서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前任 崔長官께서 어떻게 答辯하셨는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관례라면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李相洙委員** 관례라는 것은 關係法에 근거해서 관행이 쌓일텐데 關係法規가 분명하지 않고 방금 李委員이 말한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설립을 지연시켜 가지고 勞動部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말고 단적으로 얘기해서 設立申告書에 자기가 원하는 團體 이름만 쓰면 신고증을 줄 용의가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인준증이 없으면... 사실은 저희는 일관성 있게 行政處理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答辯하고 비뚤어진 얘기입니다마는 13條 14條에 所屬된 勞動組合의 명칭을 쓰도록 되어있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勞動組合들이 企業內에서 자생적으로 조직하는 組合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도 勞動組合을 조직하려면 上級聯合團體 또는 產別勞動組合에 찾아가서 설립절차를...

○**李相洙委員 局長** 그만 얘기하시고 長官에게 물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局長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勞動部長官 張永結**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인준서가 없는 줄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勞動組合法 第3條 1項에 필요직 기재사항에 所屬된 聯合團體의...

○**李相洙委員** 저기에 인준서라는 말이 나오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명칭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洙委員** 所屬된 聯合團體의 명칭만 기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명칭만 기재하고 내면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그것은 團體의 명칭을 기재해가지고 그 團體에 가입하겠다는 확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노련은 韓國勞總에 가입하겠다고 9個月이나 1年을 끌어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勞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인준증하고 같이 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所屬된 聯合團體의 명칭을 기재하면 그것이 맞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勞動組合 設立할 때 형식적 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지 실질적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일에 이런 식으로 심사하려면 거기에 기재된 것 전부다 심사할 수 있어요! 이런 設立申告證을 준 다음에 나중에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 문제는 勞動組合法 施行令 8條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증 교부문제가 規定이 되어 있는데 필요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허위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반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李相洙委員** 필요직 기재사항으로써 聯合團體의 명칭을 쓰면 기재는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재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사를 전부 한 다음에 발표하나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래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인준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런 부가적인 해석은 어떻게 나오니까? 法 해석을 상당히 강하게 지나치게 확대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 몇몇몇년간 가지고 있는 관례입니다.

○**李海瓊委員** 三星重工業은 인준증 없이 어떻게 발급했다고 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원격지에 소재한 경우 등등 또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등등이 뭐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노동조합훈령지침이라는 것이 매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李海瓊委員** 그러니까 答辯하시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李相洙委員** 그리고 전국고무산업 勞動組合聯盟은 인준서가 첨부되었던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차라리 일관되게 法 해석을 한다면 그나마 이해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주고... 완전히 對象勞組를 평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데...

病院勞聯은 어떻게 하고 言論勞聯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病院勞聯問題는 聯合勞聯하고 협의해서 病院勞聯이 독립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서로 분리되어서 인준증이 서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言論勞聯問題는 言論勞聯에서 韓國勞總에 가입의사를 제출하여 저희들이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가입의사를 제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서면으로 가입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가입신청서만 제출한다는 말씀

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가입신청에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李相洙委員** 가입신청서를 내면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次官이 答辯드리겠습니다.

言論勞聯의 경우는 出版勞動組合에서 代議員大會에서 規約를 改正해서 정식으로 분리결의를 했고 그래서 勞總의 인준신청을 하면 제가 듣기에는 勞總에서 곧바로 인준서를 내줄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하여튼 勞總에 가입신청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신고증을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사무금융의 경우에는 몇번에 걸쳐서 勞總에 가입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해서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言論勞聯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勞總에서 가입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勞動部에서 이 두件에 관해서 가입신청을 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인준서 없이 신고증을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對答해 주세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言論勞聯의 경우 인준을 신청하는 것이 서류로 입증이 된다고 하면 확인을 한 것으로 봐서 신고증을 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病院勞聯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病院勞聯의 경우는 자체내 所屬聯合團體에서 분리결의가 되지 않고...

○**李相洙委員** 勞動部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주세요.

이 두 勞聯에 대해서 최소한 공통된 입장을 취해야 할텐데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지막으로 인준서만 남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가입신청을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신고증 줄 용의가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李龍俊** 病院勞聯問題는 별도로 검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저는 일반화 시켜서 모든 勞

動組合에 다 통용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라고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최소한 이 病院勞聯과 言論勞聯에 적용되는 원칙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준서 문제에 관해서 이 두 勞聯에 대해서는 上級團體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만 붙이면 인준서 없이도 신고서를 낼 수 있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言論勞聯의 경우에는 그러한 서류적 증거만 있으면 합시다라는 病院勞聯의 경우에는 그 단계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病院勞聯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勞動部次官 李龍俊** 言論勞聯은 規約이 개정이 되고 또 분리결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條5號에 저촉이 안 된다는 그런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病院勞聯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病院勞聯의 경우는 차후에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仁濟委員 次官!** 李相洙委員의 이야기는... 病院勞聯에는 產別勞聯의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문제와 大韓勞總의 인준증문제 두 가지가 얽혀 있는데 產別勞聯에서 분리결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大韓勞總의 가입과 관련한 인준증문제도 기존의 사무노련이나 言論勞聯과 똑같이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히 문서로 입증되면 인준증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는데 그것 명백히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次官 李龍俊** 言論勞聯에서 밝은 그런 절차를 밟고 그런 상태라면 같은 對答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對答이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현재 상태가 아니라 大韓勞總의 인준증을 지금 勞動部에서 하나의 要件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大韓勞總에 가입하고자 해도 인준증을 안 줄 경우에는... 지금 사무勞聯도 했고 言論勞聯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例外的인

기준이지 될 그걸...

○**勞動部次官 李龍俊** 病院勞聯도 言論勞聯과 같은 절차를 밟고 그런 상태라면 같은 對答이 될 수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약간 次官께서 미묘한 문제를 남겨놓으면서 對答하는데 솔직하게 對答해주세요.

(韓光玉幹事, 盧仁煥幹事와 司會交代)

우선 인준서 부분하고 조직의 중복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인준서 부분에 관해서 勞動部가 다른 일반원칙과 관계없이 이 두 부분에 관해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 신고증을 주겠다고 우선 정의를 해 주시지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言論勞聯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면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시면 그 정도의 절차라고 하면 우리가 加入하겠다 하고 內容證明을 우편으로 보내서 加入申請을 한다든지 편지를 첨부하면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勞動部次官 李龍俊** 그 문제는 李仁濟委員님 그런 質問이라면 제가 아까 對答한 내용대로 答辯이 될 수가 있었는데 產別自體規約改正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組織對象이 重複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內容證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조직에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다만 그러한 전제가 言論勞聯과 같은 그러한 절차가 명확하게 똑같이 밝아졌다면 그것은 똑같은 대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두개다 동일하게 認准書問題는 처리하겠다는 말씀 대답을 하신 것으로 보고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그렇지 않습니다.

○**李相洙委員** 그 부분만 딱 떼어서요.

認准書 부분만... 어떻게 간단한 문제를 토를 다십니까?

그 다음에 앞에 다른 문제가 해결 안 되어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어떻습니까? 나왔다고 치면 되겠지요? 次官님 그렇지요?

○**李仁濟委員** 勞總認准證은 勞總에 가입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면 勞總에서 거부할 때 認准證도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보편화된 원칙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하는데...

○李相洙委員 그러면 認准書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원칙으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病院勞聯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組織이 重複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겠습니다.

현재 聯合勞聯은 纖維 化學 金屬 航運 이런 연맹하고 다 조직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全國고무産業勞動組合聯盟은 분명히 조직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病院勞聯만 조직이 중복된 것을 문제삼을 리는 없지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양해가 되신다면 勞政局長으로 하여금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서로 입장 곤란하다고 다 말씀을 피하는 것입니까?

○勞動部次官 李龍俊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李相洙委員 어때요? 病院勞聯에 관해서 조직이 중복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를 또 하나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기존 勞組가 조직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纖維 化學 金屬 航運 등하고 聯合勞聯하고 관계 방금 또 申告證을 주었다는 全國고무産業勞動組合하고는 분명하게 중복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일부 產別勞聯間的 조직이 중복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 약간의 중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 원리적으로는 產業別로 구분을 해서 조직중복이 없도록 나가겠다는 것이 產別勞聯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일체 중복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全國고무産業勞動組合聯盟은 聯合勞聯하고 중복이 되지만 申告證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病院勞聯도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음다마는 聯合勞聯은 확연하게 產業別로 구분이 안 되는 여러 가지 產業이 집합해 가지고 그야말로 聯合의으로 聯盟體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勞聯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產業이 거기 가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모든 産業을 產業別 勞動組合으로 구분할 적에 원칙적인 組織은 重複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行政事項입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勞動部의 입장으로 하더라도 全國고무産業勞動組合聯盟도 聯合勞聯하고 組織이 重複되지만 申告證을 준 것처럼 病院勞聯의 경우도 비록 聯合勞聯하고 組織이 중복된다고 보더라도 全國고무産業勞動組合聯盟처럼 취급하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認准書問題도 加入申請書를 내가지고 첨부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認准書問題도 저희 次官께서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規約을 改正해서 適法하게 設立을 해야 된다는 부문이 남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李相洙委員 도대체 病院勞聯하고 全國고무勞聯을 갖다가 차별대우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차별대우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聯合勞聯은 여러 가지 產業이 확연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重複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全國고무産業勞動組合聯盟에 加入된 團體는 신발製造業 등이 있는데 聯合勞聯에 지금 고무關聯産業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이 病院勞聯은 명백합니다. 똑같이 취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원래 化學勞聯所管으로 고무産業이 들어가 있었는데 化學勞聯이 規約을 改正해서 고무産業勞聯을 독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設立을 해서 認准

證을 받아 가지고 申告를 해서 申告證을 받은 내용입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全國고무産業勞動組合聯盟은 87年度에 聯合勞聯과 조직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申告證을 받았읍니다.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형식상으로 聯合勞聯과 조직이 중복이 있지만 聯合勞聯과의 중복은 사실상 중복이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해준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病院勞聯도 다른 纖維化學金屬 이런 勞聯하고 중복이 안되고 단순히 聯合勞聯하고만 중복되면 조직의 중복은 없다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申告證을 안주는 것은 한마디로 病院勞聯이 組合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안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仁濟委員 지금 答辯者는 化學勞聯과 중복이 되어 있었는데 化學勞聯에서 分離決議를 해가지고 고무勞聯이 탄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李相洙委員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全國고무産業勞動組合聯盟이 聯合勞聯하고도 조직이 중복이 안되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는데 그 당시에 申告證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 부분은 그래서 產別勞聯의 組織分野가 원칙적으로는 서 있지만 細部的으로 들어가서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이 承認을 드리고 특히 聯合勞動組合인 경우에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産業들을 주위 모아가고서 組織分野로 보기때문에 聯合勞聯인 경우에는 다른 產別聯盟하고 조직이 중복되는 경우가 왕왕 더러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聯合勞聯하고 조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중복되어도 봐줄 수 있다는 취지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러니까 다른 產別하고 聯合勞聯하고의 組織重複問題는 사실

은 본질적인 중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본질적인 중복으로 안보기 때문에 그런 중복의 경우는 봐준다는 취지 아닙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이것은 化學勞聯에서 고무勞聯이 떨어질 적에 聯合勞聯에 그런 고무産業分野가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읍니다.

○李相洙委員 얘기를 돌리지 마시고 聯合勞聯하고 組織紛糾가 있을 경우에는 聯合勞聯 자체라는 것이 상당히 뭉뚱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의 중복으로 안본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全國고무産業勞動組合도 그 당시 申告證 준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李相洙委員님께서 고무産業勞聯의 分離·獨立問題를 聯合勞聯의 고무産業分野라는 規約上의 문제하고 중복이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產業別勞組의 產業分野라는 것이 일부 그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고 특히 聯合勞聯인 경우에는 기타 條項에 속하는 여러 가지 産業이 組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질적으로는 產業別로 확연하게 구분해서 產別聯盟이 設立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病院勞聯은 病院勤勞者라는 확실한 分野가 聯合勞聯의 組織分野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分離決議를 안해 주기 때문에 이의 設立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報告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각의 차이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 行政의으로 볼 때는 實務者 입장에서는 더 이상 裁量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産業의 多樣化에 따라서 產別聯盟이 分化되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自律의으로 合法的인 절차를 밟아서 規約改正을 해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兩側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李相洙委員 도대체 얘기를 계속하는데 솔직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읍시다.

고무産業勞動組合聯盟하고 聯合勞聯하고 조

직의 중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일부 있다고 봅니다.

○**李相洙委員** 病院勞組하고 聯合勞聯하고도 조직의 중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病院勞聯은 애초부터 聯合勞聯의 組織分野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속해 있지만 조직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시면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직의 중복을 얘기할 때 聯合勞聯은 별도로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產業聯盟에 못 들어가면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組合 만들 수 있다고 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로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항을 가지고 설립을 방해하거나 沮害하면 되겠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 勞動部에서는 추후도 방해 할 생각이 없습니다.

自律적으로 適法하게 分離해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쌍방에게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病院勞聯에 관해서는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申告證을 안 주고 있고 言論勞聯에 대해서는 認准書를 가지고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도대체 勞動部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설립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설립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또 왜 그렇게 무리한 해석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勞動部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다른 部署하고 협력해서 하는 문제라면 勞動部가 힘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 판단 내리

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번에 改正되는 法에는 만에 하나라도 의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입할 聯合團體라고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두 부분에 관해서 다시 정리해서 물겠는데 病院勞聯의 조직중복문제는 全國고부產業勞動組合聯盟처럼 중복이 형식상으로 되지만 문제 삼지않고 그 다음에 病院勞聯과 言論勞聯에 있어서 認准書問題는 신청만 하면 認准書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가지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용의 없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후자의 문제는 지금 李相洙委員님 말씀 하신대로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역시 미해결 문제로 남습니다.

천상 그것을 해결하려면 쌍방이 合意를 해서 適法節次에 따라서 規約을 改正하고 이렇게 設立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李相洙委員** 너무 상식적인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얽매어 계시니까 안타까운데요 聯合勞聯경우에도 化學 金屬 纖維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纖維業體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聯盟에 가입되어 있는 纖維業體가요...

○**金炳龍委員** 李相洙委員님 제가 거기에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管轄權問題이면서도 새로운 하나의 聯盟이 탄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政府로서도 신중을 期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產業別勞動組合 또는 聯合勞動組合이라고 하는 성격을 보면 產業別이 속하지 않는 이러한 事業場을 聯合勞動組合에서 조직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두어 들이다 보니까 病院勞動組合이 約 한 150個가 조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政府로서도 이와 같이 150個 정도의 單一事業場 同一勞動하는 데가 조직이 되었으면 聯合勞動組合으로서도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獨立을 시킬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盧仁煥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단 政府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를 해서 聯合勞動組合에 이와 같이 전체 單一事業場에 조직들이 하나의 聯盟으로 해달라고 하니 적어도 聯合勞動組合에서도 재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을 독립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政府가 강력하게 行政指導를 해야지 그냥 적당히 조직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 온다 이것입니다.

또 政府가 보고한 것으로는 60個 事業場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金炳龍委員**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個 事業場이 새로운 聯盟을 결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約 3萬5,000名인데 거기서 3萬名이 새로운 聯盟을 조직을 해가지고 독립을 시켜달라하는 요청이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그 조직들이 勞總에 加盟까지 하겠다 이것이에요.

政府로서는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단 있다고 하면 그 聯合勞動組合이 승인을 해주면 더욱 좋는데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政府로서나 勞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政府가 좀더 行政力을 발휘를 해서 쌍방이 서로 안 들으면 듣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도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타협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勞動部가 行政指導라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勞動部가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그 當該 聯盟에서도 政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독립시켜서 聯盟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政府立場에서 長官께서 확실한 저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病院聯合勞聯問題 가지 金炳龍委員께서도 먼저 質疑가 계셨고 李相洙委員께서도 여러가지 勞聯自體의 복합문제

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病院勞聯과 聯合勞聯의 規約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金委員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行政指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이것은 단순한 規約을 바꾼다고 하는 行政指導의 문제가 아니고 法解釋上의 문제이니까...

○**金炳龍委員** 李委員님! 그것이 規約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規約을 개정 안 해도 當該 議決機關에서 決議만 되면... 規約上에 그렇다고 하면 전체가 해당이 다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臨時代議員大會를 열어서 規約을 改正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도만 한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강력하게 언제까지 이것을 改正을 해서 合理的으로 合法的으로 病院聯盟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날짜를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行政指導로서 또 產別勞聯의 獨立性이라든지 또 組合의 自律性을 보아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방금 金炳龍委員님 李相洙委員님께서 그러한 충분한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行政指導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聯合勞聯이 勞動組合法上 聯合團體인가 그렇지 않으면 一般 勞動組合團體로 보아야 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產別聯盟입니다. 勞動組合法上...

○**李相洙委員** 聯盟體가 아니면서 勞總에 加入된 단체가 몇個 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組合입니다. 全國鐵道勞動組合 全國專賣勞動組合 全國遞信勞動組合등 입니다.

○**李相洙委員** 이 경우도 勞動組合이지 上級團體는 아니지 않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全國의인 규모를 가진 그런 경우는 產業別 勞動組合聯盟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聯盟體로 보지 않고 조합이 크기 때문에 勞總에 가입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지 않습니다. 全國聯合勞動組合聯盟은 특히 特種產業에 가입할 수 없는 여러 產業을 망라해서 聯盟體를 구성해서 그것이 기타 產業別聯盟으로서 勞總에 가입되어 있는 產業別聯盟體입니다.

○**李相洙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勞動部의 입장은 전혀 굽히지 않고 勞動部의 입장에서 지도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 長官님 뜻을 받들어서 조속한 時日內에 매듭짓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지난번 常委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해석상의 문제인데 勞動部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바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사실상 勞動組合 지도라는 것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自律團體이기 때문에 自律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行政官廳에서 人爲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勞動部가 이런 식으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유연성을 발휘 못한다면 안타깝고 저희들이 勞動部를 위해서 무엇을 협조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勞動部에 협조해서 勤勞者와 勞動者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勞動部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質問할 것은 일괄적으로 묻고 答辯을 바랍니다.

최근에 賃關가 일어나고 있어서 勞總에서도 賃金の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經總에서도 정했습니다. 勞動部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능동적으로 賃關에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번째 최근에 中小企業이 倒産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원貨切斷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廢業된 中小企業의 숫자와 가능하다면 名單과 또 廢業되는 業所의 勤勞者들이 어

떤 상태에 있는지 다른데 就業해서 옮겨가는지 이런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外國企業이 우리나라와 직접 또는 合作投資를 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런 外國企業이 勞動條件이 會社에 불리해 지니까 일정한 超過支配利潤을 享有하다가 다른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勞動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對策을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柳昇珪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昇珪委員** 質疑할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서 委員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資料要請해서 檢討한 다음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全國聯合勞聯規約중 構成部分을 내 주시고 全國고무勞聯 全國化學勞聯規約의 構成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0年度 勞動部指針에 보면 勞組運營에 대한 指針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組合費 사용이라든가 前任者數등 그 指針書사본을 주시고 80年12月30日쯤 立法會議에서 改正한 勞動組合法중 86年11月30日 삭제됐습니다마는 24條 2項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外國人 投資企業中 현재 勞使紛糾中인 업체의 現況 三星勞組가 金屬勞聯에 加入願 낸 사본 三星勞組가 金屬勞聯에 義務金을 냈으면 그 納付實績 三星勞組가 자기 組合員들한테 組合費를 받은 徵收實績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았는지 알려 주시고 아까 規約에 보니까 三星勞組規約에 보니까 組合費가 얼마라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인지 1%인지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80年 國保委에서 勞組幹部淨化指針書 나온 사본도 내일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柳昇珪委員께서 오늘 質疑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내일 質疑에 필요한 資料要請으로 끝내고 내일 質疑를 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數衍說明이 조금 필요한데 당초에 幹事會議에서 合意하기는 두번째 이 세분이 質疑를 하고 또 答辯을 듣고 그 다음에 내일 會議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합

意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세분의 質疑를 듣고 答辯을 내일 듣도록 하자는 各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柳昇珪委員께서는 質疑를 내일 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해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먼저 質疑를 하신 委員께서 答辯을 내일 듣겠다 하는 것도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午後 2 時에 開議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盧武鉉委員 죄송합니다. 아까 質問中에 議事進行으로 잠시 動議案을 提出할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렸는데...

○委員長 金令培 예. 말씀하십시오.

○盧武鉉委員 盧武鉉委員입니다.

아까 本委員의 長官에 대한 政策質疑過程에서 대충 釜山港運勞組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점에 관해서 質疑를 마치고 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本委員으로서 는 本常任委員會에서 調查小委員을 구성하든가 調查團을 구성해서 調查에 착수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취지의 提案을 합니다.

提案理由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慣行化한 痼疾의인 非理로써 폭력을 수반하고 있고 庶民生活를 침해하는 아주 反社會的인 犯罪라는 점은 勞動部가 작성한 84年度 報告書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88年12月27日 檢察의 搜查結果로 나온 公訴狀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公訴狀을 보거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不拘束處理되었다는 점 이런 심으로 비추어서 地方勞動行政官署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정한 調查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도 능히 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우기 이 事件에 관해서는 84年 業務監査 결과 그 이후에 是正措置에 관해서 勞動部가 계속적인 감독을 하지 않았고 이 문제에 관한 역시 職業安定法上的의 소위 犯法行爲가 있었고 또 許可取消 여부에 관해서 충분히 調查되었어야 될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권을 발동하지도 않았읍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88年10월에 이와 같은 構造的 문제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을 호소하는 勞動者들의 特別監督의 요청에 대해서도 아주 무성의한 처리를 하고 받았기 때문에 政府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是正의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읍니다. 檢察도 안된다 勞動部도 여지껏 나서지 않았고 그리고 本常委에서 本委員이 質問할때 地方勞動行政官署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 構造的의고도 痼疾的인 문제이기 때문에 勞動部 本部가 직접 수사할 의향이 없는가 물었을때 거기에 대해서 長官은 매우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答辯을 가지고는 本委員이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즉시 힘을 기울여서 이와 같은 社會惡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기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調查하고 있는 國會議員에 대한 헐박의 행위까지도 가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勞動部가 이와 같이 성의가 없다면 이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대로 눈감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國會라도 나서서 이와 같은 構造的인 社會惡을 뿌리뽑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이 늦은 시간에 지금 論議하지 않더라도 뒤에 또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부닥쳤을때 즉시 우리 國會가 이와 같은 社會惡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決議를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 實質的으로 調查해서 밝혀나가는 것 그 이상의 政治的 효과도 아울러서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決議로 나설 때라야 비로소 이와 같은 社會惡이 근절되고 또 政府도 이와 같은 非理의 척결에 성의를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숨가쁜 급한 일이나 이런 의문이 계시겠지만 決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뜻에서 動議案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本委員이 좀더 상세한 資料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資料를 調查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헐박과 物理的인 공격을 당하

고 있는 입장이라는 점을 아울러서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釜山港運勞組의 非理嫌疑에 관해서 本常委의 調査團 構成을 發議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動議하신다는 표현이시겠지요?

○盧武鉉委員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再請있습니까?

(再請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三請있습니까?

(三請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動議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討論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되면 李相洙委員 發言하시지요?

○李相洙委員 간단히 말씀드리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盧武鉉委員께서 얘기했다고 보이고 한 委員한테 맡겨서 調査를 계속할 수 있겠지만 한 委員이 調査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떤 위험도 있다고 하나나 國會次元에서 調査하고 있는 委員도 보호할 점 調査團을 파신것으면 좋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또 다른 發言하실 委員 안계세요?

李仁濟委員 發言하십시오.

○李仁濟委員 지금 盧武鉉委員이 釜山港運勞組의 構造的인 非理에 관해서 우리 勞動委員會에서 진상을 調査하자는 動議를 하셨는데 우선 이 문제가 과연 國會次元에서 調査해야 될 事案이냐 다시 말하면 國政과 무슨 관련이 있는 事案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國會가 調査해야 될만한 의미가 있는 事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勞動組合 가운데 클로우즈드샵을 慣行的으로 유지하고 있는 勞動組合이 港運勞組 뿐이고 港運勞組는 全國에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港運勞組의 구조를 보면 勞組이면서 동시에 事業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勞動組合 執行部가 勤勞者들의 권익을 위해서 使用者와 대립하고 使用者와 맞서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勞動組合 執行部가 事業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바로 이 勞組 執行部の 事業主的인 성격으로부터 組合員인

하역인부들을 보호할만한 아무런 政策도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行政官廳이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港運勞組에 대한 勞動政策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수립해서 港運勞組의 勤勞者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勞動政策을 세우에 있어서 이 港運勞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勞動委員會가 이번에 비단 釜山港運勞組의 구조적 비리 자체를 조사해서 적절하는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港運勞組 전반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港運勞組에 관한 勞動政策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사활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贊成發言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李康熙委員 發言하십시오.

○李康熙委員 우선 釜山出身地域인 그 지역에 연고지를 두고 우리 勞動委員會같은 同僚委員인 盧武鉉委員이 港運勞組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게 하는 이런 사실 또 이러한 勞組問題를 우리 國會次元에서 염려하는 차원 상당히 여러가지로 동감하고 또 한편 本委員이 港運勞組에 현재 몸을 담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여기서 우리 委員會에서 하나 명백히 해야 될 것은 勤勞者들이 請願을 내서 이 조사단을 구성하려 하는지 아니면 우리 國會에서 조사를 해야 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사하는지 하는 것을 좀 명백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000萬 勤勞者가 서로 뿔뿔과 견해차로 해서 현재 勞勞紛爭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의 차원에서 勤勞者의 어떤 請願에 의해서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우리 國會次元에서 발동을 한다면 앞으로도 그것이 하나의 선례며 관행이 되었을 때에 과연 그러한 처리를 우리가 적시적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國會次元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리 立法府인 國會에서 물론 勞動

部 아까 答辯에서 그런 문제가 우리 國會에서 만족할만한 答辯에 없고 또 해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本委員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司法機構와 엄연히 行政府에 그러한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더 촉구하고 또 이에 대해서 勞動部나 司法機構에서 할 수 있는 기능체계가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전혀 무기력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한번쯤은 그러한 일에 우리가 이 國會次元 보다는 司法機構나 行政府 쪽에 한번 더 촉구해서 이 문제를 한번더 우리가 처리 사항을 관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우리 國會次元에서 다시한번 論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本委員의 의견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李康熙委員 發言가운데 委員長이 答辯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제제기 된 것이 請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것은 議事進行上 委員長이 答辯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會議 벽두에 立法調查官으로부터 請願이 들어와 있음을 報告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報告를 받고 그 請願處理問題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盧武鉉委員께서 動議한 내용은 請願하고는 관계없이 動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성격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韓光玉委員……

○韓光玉委員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李康熙委員께서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李康熙委員도 우리 同僚委員이지만 또 仁川에 港運關係를 맡고 계시는 관계로 그 港運勞組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는 아마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고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盧武鉉委員이 소위 動議하신

이 내용은 제가 請願書를 꼭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國會次元에서 과연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심사숙고 해보았는데 우리 同僚委員이 협박당하고 공감당했다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組合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國會次元에서 조사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의 진상은 규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비리는 척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우리 國會次元에서 한번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 勞動委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代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사단 구성의 動議에 찬성하는 發言을 마칩니다.

○委員長 金令培 金炳龍委員 發言하십시오.

○金炳龍委員 지금 盧武鉉委員님께서 문제제기한 조사단 문제는 좀 우리 委員會로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4黨間의 의견도 좀 더 종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委員長을 중심으로 해서 4黨 幹事가 같이 幹事會議에서 한번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停會를 하고 또 幹事會議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 내일이라도 우선 이 문제를 幹事會議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盧武鉉委員 李康熙委員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司法機關도 있고 行政機關도 있으니까 거기에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점입니다.

4月11에 접수된 진정내용이 조사하는데 8個月이 걸렸고 그동안에 檢事가 세번 교체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척 의혹스럽다 不拘束될 수 없는 사람이 不拘束되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명백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비리의 척결에는 檢察로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았다 이 점



때문에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行政機關이 어떠했다는 것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監督官廳이 전혀 감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오늘 國會까지 비로서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오늘 이것이 처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請願이 되었거나 진정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보가 접수되었다면 우선 本委員으로서도 警察이나 檢察에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가다렸을 것이다. 本委員이 사실상 이와 같은 진정에 접한 것은 昨年 6月이었습니다. 그런데 檢察에서 搜查를 하고 있거 때문에 일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일부터 幹事會議를 하는데 여러가지 小委活動이나 여러가지 중복이 되고 하니까 특별한 討論이 더 없으면 지금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共和黨의 金炳龍委員님 웬만하면 양해해 주셔서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金炳龍委員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와서 비로서 처음 본 것이란 말이예요.

저는 다 읽어보지 않았고 다만 委員間에는 서로 믿기 때문에 저도 찬성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는 4黨間의 의견을 모아가고 委員會에서 결정하는 것이 좀더 심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안되면 내일 아침이라도 저희 幹事들을 委員長께서 소집해서 의견을 모아가시고 常任委員會에서 결정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金炳龍委員 發言을 의견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충분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安瓊熙委員 發言하십시오.

○安瓊熙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1주일 빠지는 두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行政官僚를 오래했기 때문에 말 주변도 없고 사실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昨年 6月부터 지금까지 盧武鉉委員께서 고충을 당하

신대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그동안의 고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그 참을성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옆에 同僚委員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조금 전에 金炳龍委員께서 幹事會議를 열어서 다시한번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지 하는 생각을 서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登院해서 1月13日 첫 常委가 있었습니다. 그후로 조사단이 두번이나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勞動 常委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幹事會議席上에서 다시 論議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李康熙委員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安委員께서 하신 말씀이나 거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것이 일단 勞組끼리 문제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단 시작이 되어서 우리 盧武鉉委員님 한테 그런 괴로움이 여러가지로 겹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勞組 自體를 「크로잡」이 되었던 勞動組合 自體뿐인 것입니다. 勞使次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勞組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관행을 깊이있게 사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울러 行政府쪽에서 그동안에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런 얘기에 집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우리 勞動委員會는 이때까지 13代에 들어와서 아직 1年이 안되었습니다마는 與野間에 평화적으로 어떤 勞使問題가 있을 때 원만한 절충과 운영을 委員長님 이하 모든 委員님들이 협조속에서 해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의견을 가지고 특별히 어떤 논란을 하는 것 보다는 幹事會議에서 잘 정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더 올렸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알겠습니다.

委員長으로서 이 문제에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政黨間에 대립되어야 할 政治的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저는 예의 살피고 있는 중인데 어떻습니까? 盧武鉉委員 내일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분위기상 좋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盧武鉉委員 다른 委員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發議者로서도 미움을 안받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명백한 것은 이것은 各黨의 어떤 政治的인 입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한 가치중립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가 발단된 것은 勞組內部的의 조직적 분규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하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조직적 분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國會의 義務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단서가 누구의 어떤 의도된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國會는 그래서 조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고 오로지 공정히 하는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널리 헤아려 주셔서 내일 幹事會議에서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令培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그전에 幹事會議에 부의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께서 動議한 내용은 釜山港運 勞動組合에 한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贊同發言하신 李仁濟委員의 發言內容에 있어서는 釜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港運勞組 전반에 관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가운데에는 과연 港運勞組라는 것이 人事權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엄격히 가려가지고 이것이 使用主나 勞動組合이나 이런 의미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發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釜山港運勞組에 한할 것이냐 아니면 李仁濟委員 發言內容을 첨가해서 전반적인 문제로 다룰 것이냐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幹事會議에 부의가 되어야 되겠다 또 이 정리문제까지

幹事會議에 맡기겠다 하면 그런 방향에서 다룰 것이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저는 조사대상은 釜山港運勞組로 한정하되 다만 조사방법이나 취지는 港運勞組하고 다른데도 구조적으로 비슷하니까 또 제가 지난번에 國政監査때에도 麗水港運勞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진정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추궁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비단 釜山港運勞組의 비리는 어떤 執行部 한사람의 잘못도 원인이 있겠지만 구조적인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한군대를 조사하지만 그러나 그 조사의 의미는 港運勞組 전반의 모순 이런 것을 이번에 찾아내서 港灣 勤勞者들에 대한 勞動政策을 세우는데 도움의 자료로 삼아야 되겠다는 뜻이고 조사대상은 釜山港運勞組 하나로 하는데 아무런 異議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남습니다. 이것은 幹事會議에서 論議할 때도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港運勞組라고 하는 것이 港灣 勤勞者들을 쓰고 안쓰고 人事權까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이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어찌피 여기 勞動部長官이 계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점을 밝혀 주시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勞動組合組織에 있어서 「샴」制度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學問的으로 딱딱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오픈 샴」은 자유롭게 加入하고 자유롭게 脫退할 수 있는 것이고 「유니온 샴」은 저희도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勤勞者가 勞動組合에 加入해 가지고 使用者하고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團體協約을 체결하면 「유니온 샴」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로즈드 샴」입니다. 「크로즈드 샴」이라는 것은 使用者가 그 組合의 組合員이 아니면 애초부터 雇傭을 할 수 없는 制度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채택되느냐 보통 一般企業에 있어서는 使用者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對1로 雇傭契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勞動組合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크로즈드 샷」인 경우에는 使用者가 不特定多數입니다.

예를 들면 驛頭라든지 港灣이라든지 이런 데서 荷役作業을 시킬적에 荷主라든지 船主는 不特定多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배에 짐을 싣고 내려와서 내릴적에 그 埠頭に 組織되어 있는 埠頭勞動組合員의 荷役作業에 의해서 荷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크로즈드 샷」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勞動組合이 勞務供給事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勞動部所管에 職業安定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職業安定法 第17條에 의한 勞務供給許可를 得해서 不特定多數의 使用者에게 그 組合員을 就業을 시키고 勞動組合으로서 自律的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組織體系는 저희 나라뿐이 아니고 埠頭라든지 驛頭라든지 그런 荷役作業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使用者가 不特定多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世界 共通的으로 이러한 「크로즈드 샷」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發言 있습니까?

○盧武鉉委員 動議案에 관해서 제가 提案을 했습니다마는 再請하신 분들이 별다른 異議가 없다면 우선 착수는 이렇게 하더라도 차체에 좀더 조사의 범위를 키우고 全體的인 港運勞組의 全體의 構造의인 문제를 연구 조사해 가는 한 과정으로 설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異議는 없습니다.

그래서 再請하신 분들이 異議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내일 幹事會議에서는 조금 더 문제를 크게 다룰 수 있는 것도 함께 용납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異議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너 發言하실 委員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하고 내일 午後 2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時34分 散會)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南 載 熙
盧 仁 煥	安 瓚 熙	李 康 熙
李 台 燮	鄭 宗 澤	李 相 洙
李 海 瓚	韓 光 玉	盧 武 鉉
柳 昇 珪	李 仁 濟	金 炳 龍
金 鎔 采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卓 英 鍾
立 法 審 議 官	宋 芳 燮

○出席國務委員

勞 動 部 長 官	張 永 喆
-----------	-------

○出席政府委員

勞 動 部		
次 官	李 龍 俊	
企 劃 管 理 室 長	鄭 東 佑	
勞 政 局 長	具 春 然	
勤 勞 基 準 局 長	金 基 德	
職 業 安 定 局 長	金 基 濟 憲	
職 業 訓 練 局 長	禹 誠 謙	
勞 動 保 險 局 長	姜 斤 熙	
產 業 安 全 局 長	尹 錫 春	

○其他參席者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理事	李 憲 琦
韓國產業安全公團理事	鄭 東 喆
勤勞福祉公社社長	沈 大 燮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全 潤 壽
韓國勞動研究院院長	裴 茂 基

【報告事項】

○請願回附

釜山港運勞動組合의 不正非理判決을 위한 國會調查團派 遣要請에 관한 請願

(2月18日 釜山直轄市南區牛岩 2 洞181(29'4)

김금석外 2人으로부터 盧武鉉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釜山港運勞動組合은 一部 幹部의 勞務供給權을 빙자한 人事權의 濫用으로 不

正非理是正을 要求하는 組合員들이 解雇되는 등 不當하게 運營되고 있으므로 同 組合이 正常的으로 運營되도록 國會에서 調査團을 派遣하여 정밀하게 調査하여 주기 바라는 內容임.

2. 職業安定法에 의한 勞務供給權을 가진 釜山港運勞組의 一部 幹部는 勞動部の 制度改善指示와 港灣荷役機械化에 대한 勞務供給需要原則을 무시한 채 規約을 變更하여 港灣勞務供給秩序를 어지럽히고 勞務供給을 빙자한 金品授受와 人事權을 利用한 強壓的인 組合運營 組合費의 浪費등으로 각종 非理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不當人事是正 및 規約履行을 要求하는 組合員들에 대하여 集團暴力 및 解雇등 人事報復을 하고 있으므로 釜山港運勞動組合의 不正非理를 剔快하여 同 組合이 正常的으로 運營되도록 國會에서 調査團을 派遣하여 정밀하게 調査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2月20日字 回附됨.